

2 0 1 4

제 1기 토래상담가 교육자료집



STOP SEXUAL VIOLENCE



연세대학교 학생복지처 성평등센터

2 0 1 4

제 1기 토래상담가 교육자료집



**STOP
SEXUAL
VIOLENCE**



연세대학교 학생복지처 성평등센터

강의 일정표

회차	일시	프로그램	
1	12/29(월) 15:00 ~18:00	-오리엔테이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훈련	로리주희(같이교육연구소 소장)
2	12/30(화) 15:00 ~18:00	정체성과 젠더: 한국사회에 서의 '나'점검하기	정승화(연세대 강사)
3	1/5(월) 15:00 ~18:00	한국사회의 성문화와 섹슈 얼리티의 이해	최지나(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4	1/6(화) 15:00 ~18:00	한국사회의 젠더와 인권	김신현경(여성학자)
5	1/7(수) 15:00 ~18:00	성차화된 인간으로서의 남 성 읽기 : 비판, 분석, 방법	권김현영(여성학자)
6	1/8(목) 15:00 ~18:00	성폭력의 실태	이임혜경(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7	1/9(금) 15:00 ~18:00	데이트 (성)폭력과 스토킹- 대학내 사례를 중심으로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8	1/12(월) 15:00 ~18:00	미디어로 보는 성, 성폭력	로리주희(같이교육연구소 소장)
9	1/13(화) 15:00 ~18:00	성적소수자와 동성간 성폭 력 상담에 대한 이해를 중 심으로	한채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활동 가)
10	1/14(수) 15:00 ~18:00	여성주의 상담과 성폭력사 건지원의 이해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팀장)
11	1/15(목) 15:00 ~18:00	포레상담가 역량강화를 위 한 옵티미스트 리더십 워크 샵1	황금명륜(같이교육연구소 대표)
12	1/16(금) 15:00 ~18:00	포레상담가 역량강화를 위 한 옵티미스트 리더십 워크 샵2	황금명륜(같이교육연구소 대표)
13	1/19(월) 15:00 ~18:00	성폭력 가해자와 대면하기	로리주희(같이교육연구소 소장)
14	1/19(월) 18:00~21:00	학내 성폭력 규정 및 사건 지원 실태 및 수료식	노주희(연세대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자문 위원)

목

차

1. 정체성과 젠더: 한국사회에서의 '나' 점검하기	7
2. 한국사회의 성문화와 섹슈얼리티의 이해	15
3. 한국사회의 젠더와 인권	37
4. 성차화된 인간으로서의 남성 읽기 : 비판, 분석, 방법	49
5. 성폭력을 말하다	63
6. 데이트 (성)폭력의 이해와 대처	81
7. 성적소수자와 동성간 성폭력 상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95
8. 여성주의 상담과 성폭력 사건지원의 이해	111
9. 포래상담가 긍정리더 옵티미스트를 만나다	127
10. 연세대학교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 규정	155
11. 연세대학교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 시행세칙	161
12. 연세대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167

01

정체성과 젠더: 한국사회에서의 '나' 점검하기

정체성과 젠더: 한국사회의 '나' 점검하기

-정승화(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현대사회와 정체성의 탐색: 어떻게 고민을 시작할 것인가?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막 성인이 된 20대 초반 시기에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막상 주어진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입시에 몰두해 있는 동안에 제쳐두었던 실존적 고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누군가 정해준 미래가 아닌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다. 하지만 정작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결심도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인식이 동반되면 이제까지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고 믿어 왔던 '자아' 자체를 심문하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도, 혹은 안정적으로 확립되어 있거나 혹은 과거의 습관이 안내하는 방식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욕망이 무엇인지, 결국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자신의 내적 소망과 일치하는 삶을 구상하고 그러한 삶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다.

이와 같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자기계발서나 '자아를 찾아나서는 여행'의 안내서를 참조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요법이 안내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매순간 '나는 내 자신을 위해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이렇게 매 순간 자기의 내면을 응시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 신체적 감각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는 자기이해는 일관되고 가치있는 정체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과정의 일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해 창조하는 우리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아를 더 잘 알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정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가 된다. 자아에 대한 탐색과 인식의 변화만으로도 많은 잠재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대중심리학과 자기계발서들은 개인들의 자기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준다. 때로 너무나 무기력해져서 스스로는 이와 같은 탐색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세상 속에 자기 자신을 조화롭게 위치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신의학자나 심리상담가들의 도움을 받아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가능한 방법은 자아정체성에 대한 탐색은 서구 개인주의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 대두하게 된 문제라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회학적 접근법이다. 즉 현대사회의 변화가 개인들에게 자아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정체성 자체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는 개인들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자아정체성이 현대에 왜 문제의 핵심에 위치하게 되었는지를 현대사회의 특징과 제도들을 통해 조명한다.

이러한 시각은 정체성에 대한 탐색과 고민이 어떠한 사회변화의 맥락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된다. 정체성의 문제가 고립된 나의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와 제도의 변화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제기된 질문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정체성의 탐색 그 자체에 몰두하기 보다는 정체성을 탐색하라는 문화적 압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메타적으로 고민하게 한다. 기든스에 따르면 “오늘날 자아는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더 넓은 제도적 맥락과 마찬가지로 성찰적으로 창조”되어야 하는 기획이 되고 있다(기든스, 1997: 40). 현대사회에서 자아정체성이 성찰적 기획이 되는 이유는 현대의 자아가 수많은 선택에 열려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전통사회에서 개인들의 삶은 대체로 규범의 영향력에 강하게 얽매어 있다. 신분사회에서라면 개인은 탄생과 함께 부여된 신분질서에 맞는 행위방식과 사고양식이 이미 정해져 있다. 사회의 구속력과 규범의 압력이 강한 사회에서 개인들은 억압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질문에 노출되지 않는다. 많은 인간관계의 행동양식이 정해져 있고 이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은 도덕성이 높고 신뢰할만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개인들은 존재론적인 불안에 직면하지 않는다. 대부분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규범과 질서의 경직된 체계가 문제인 것이다. 이에 비해 탈전통사회에서는 이전의 개인의 삶을 구속했던 전통과 관습의 권위는 약화되고 개인들이 자율성이 증대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이 확대된다. 이와 동시에 개인은 습관적인 행동이 관습이 아닌 변화되는 사회에 맞춰 계속되는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물론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몫이다. 부모세대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더 이상 따를 수도 없고 변화된 세계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은 모호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기지만 때로 과학적 지식, 합리적인 견해라는 전문가 의견조차 여러 견해들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그 속에서 어떤 전문가의 견해를 믿고 따를 것인지 또 다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선택에 열려 있는 현대 사회의 개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유’의 병’에 휩쓸려 한다. 자기 앞에 놓인 무한의 가능성이 한편으로 자아의 이상을 한껏 고양시키지만 동시에 홀로 무한에 맞서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불안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정체성에 대한 탐색의 또 다른 방식은 무수하게 교차하는 정체성 속에서 자신의 존재론적 안전감과 삶의 방향을 지정해줄 하나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재조직하는 것이다. 대체로 정치적 정체성의 형성이 여기에 속한다. 여성, 노동자, 유색인, 게이 레즈비언 등등 존재하는 사회적 범주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범주를 구성하는 사회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정체성이 정치적 범주임을 자각하게 된다.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정체성이 구성되는 동학 자체를 검토함으로써 주변화되고 소외된 약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체성의 정치라는 차원에서 정체성을 탐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데올로기와 같은 이념을 통해 형성되는 주체성이기도 하고 때로 정체성의 한 속성이 사회 속에서 위계적으로 배치되는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속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 탐색하기 및 토론

정체성에 대한 탐색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될 수 있지만 우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 무수히 교차하는 정체성 속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로 하자.

젠더정체성의 형성

프로이트가 창시한 정신분석학은 젠더 형성에 관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가부장제적 핵가족 하에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 이론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거세 콤플렉스는 유아의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무의식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한다. 프로이트 이론의 급진적인 면모는 여성과 남성이 성별화된 존재로 구성되는 사회 문화적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로이트는 성의 해부학적 차이에 의해 자연적으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남성과 여성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였고 젠더 정체성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매개와 성별에 따른 문화적 요구에 의해 양성 소질과 도착적 욕망을 억압한 결과로써 획득되는 정체성 형성과정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어머니에게 접근하지 말도록 금지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린아이가 받아들인다면 그렇지 않다면 유아는 도착된 유아기의 상태를 고수하든가 아니면 거세위험을 받아들이고 오이디푸스 욕망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규범을 내면화하면서 초자아를 발달시키면서 남성 정체성을 구성해나간다. 프로이트는 여자아이가 처음에 어머니에 대해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여자아이가 어린 남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후에 프로이트는 전외디푸스단계의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어머니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갖는다는 사실이 그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에 양성간의 발달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고 여성은 남성처럼 초자아를 발달시킬 수 없기에 도덕 수준에서 남성과 차이가 있다 남성에 비해 정의감이 약하고 예정이나 증오와 같은 감정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내재적 성향 속에 존재하는 양성성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분명하게 부각된다고 보았다. 프로이트는 성심리 발달에서 모든 여성인 일차적으로 동성애자이다가 거세의 인식과 거세된 어머니에 대한 증오로 아버지를 애정의 대상으로 삼게된다고 보았다. 여자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는 성발달 단계에서 규범적 여성성의 발전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애정으로 제시하였다. 여성이 어머니에게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동기는 거세 콤플렉스가 페니스가 부재하는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여성은 거세 콤플렉스로 인해 애정의 대상을 어머니에게서 아버지로 바꾸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욕에 대한 전반적인 반감이 형성되거나 언젠가는 페니스를 갖겠다는 남성 콤플렉스가 형성되거나 아버지를 대상으로 선택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발전시키게 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의 경우만이 정상적인 여성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프로이트 이론에서 ‘정상적’ 젠더 정체성의 형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작동한다. 동성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와 이성 부모에 대한 대상적 욕망을 발전시키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 모든 젠더 정체성의 형성에서 거세위험이나 거세 콤플렉스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기반은 성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다. 즉 남자아이가 거세 위험을 느끼기 위해서는 거세된 존재로서의 여성과의 성적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자아이 역시 정상적 이성애적인 여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페니스가 결여되어있다는 성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존재해야 한다. 이렇듯 젠더 정체성의 형성에 성적 차이에 대한 인식은 주체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토대이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단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법과 남근중심주의 하에서 작동하는 욕망의 근본적인 기표로서의 팔루스(상징적 남근)의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이해할 때에야 가능한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젠더 정체성의 형성은 성적 차이가 위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프로이트가 성적 차이를 구분하는 유일한 차이의 준거를 남성의 성기인

페니스를 중심으로만 논의한다고 비판하면서 유아의 일차적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가 젠더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은 젠더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남녀 간의 해부학적 차이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분류하는 사회적 체계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Oakley, 1972: 16).

페미니스트들은 성의 사회화 과정에 일차적 양육자인 어머니의 모성적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포착하였다. 초도로우의 "남성적 성격과 여성적 성격 간의 차이점이 거의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각 세대마다 되풀이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남성과 여성이 신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여성들이 아동 초기의 보육을 책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초기의 사회적 환경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다르게 경험하게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성격이 다르게 발달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신을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규정"하는 경향을 갖는다(Chodorow, 1974: 43-44). 양성 모두 세 살 정도에 성격 형성의 핵심이 되는 젠더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이러한 초기의 주된 양육자가 대체로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격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게 있어 다른 과정을 밟게 된다고 보았다. 여성의 정체성은 어머니와의 지속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는데, 이는 어머니가 딸을 자기 자신과 비슷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자신과의 연속선상에서 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자아이는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머니와 비슷하다고 느끼고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정체성 형성에서 연속적으로 투사된다. 반면 어머니는 아들을 자신과는 대비되는 남성으로 대하고 남자아이 역시 남성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어머니와 구분지음으로써 자신이 최초로 느낀 사랑과 동감의 원천으로부터 단절되게 된다. 따라서 남성의 정체성 형성은 단절과 분리를 통해서 발달하게 되는데 자아의 경계선이 분명하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형성되게 된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 비해 개인화와 인관관계를 다르게 경험하는 사실은 기존의 정신분석학 이론이 가정하듯이 여성의 자아가 약하고 신경증에 취약한 것이 아니라, 여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감정이입'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반면, 남성들은 자아를 분리하고 단절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초등학생들의 놀이 문화에서도 양성 간의 다른 행동 유형이 관찰되었다. 발달심리학자들은 남자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규칙을 정교화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공정한 절차를 발달시키는 데 열중하는 반면 여자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관찰결과를 제시하면서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이 법의식이 높은 반면 여자아이들은 규칙에 대해 더 관대하고 자주 예외를 인정할뿐만 아니라 더 쉽사리 규칙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남성의 정체감은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여성의 정체감은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발달된다는 점은 많은 심리학자들의 관찰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대부분의 남성 심리학자들은 친밀한 인간관계는 아동의 심리 발달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페미니스트 심리학자 길리건은 발달심리학이 남자아이를 기준으로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그 결과에 대해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하다는 방식을 해석해왔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여성들의 행동 양식의 특성이 '다른' 방식의 윤리적 토대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길리건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경쟁적 성취 상황에 대해 다르게 느끼고 그 상황을 다르게 보고 반응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여성다움을 유지하는 것과 성공을 이루는 것이 서로 배치된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여성으로서 동경하는 삶과 자신이 초기 아동기에

학교에서 배운, 남성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삶 간에 딜레마가 일어난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길리건, 1994: 33). 또한 여성들의 복종적 성향과 혼돈된 판단으로 보이는 이유는 단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종속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이 가진 도덕적 관심의 본질이 남성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보살핌의 의무를 기꺼이 짊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다른 사람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다른 관점들까지 포함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길리건, 1994: 36).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보살핌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전통적으로 여성적 '덕성'으로 규정되었던 그러한 특성들이 그간의 심리학에서는 여성들이 도덕 발달에서 미성숙하고 열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삶으로부터 성숙과 발달의 의미를 도출한다면 기존의 발달이론의 관점과는 다른 도덕관이 형성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페미니스트 심리학자들은 양육이 젠더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부모 모두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그동안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 여성성의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거세불안을 통해, 여성의 경우 결핍과 부재에 대한 인식 등 '아버지의 법'의 작동 하에서 젠더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던 시각에서 초기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가 젠더 정체성 형성에 중요함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젠더 정체화에 관한 이론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남성이 초기 양육에 참여할 경우라도 형성되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논의에 반대하는 경우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들의 시각이 기존에 존재하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부여되어 있는 사회적 가치를 체계를 의문시하기보다는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는 비판도 있다. 초도로우나 길리건의 논의는 성격 차이가 사회 속에서 재구성되는 방식을 이론화함으로써 남성성과 여성성이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페미니즘에서의 젠더에 관한 논의는 성과 성적 특성의 연결이 한 사람의 인성 속에서 일관된 것이 아니라 '행위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기도 한다. 비틀러는 젠더는 고정된 인성적 특질이거나 안정된 실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관한 사회적 이상을 개인들이 수행하는 것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비틀러, 2008). 즉 젠더 정체성은 수행적(performative)인 일상의 성별을 드러내는 행위들을 통해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성애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젠더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이성애 관계를 기반으로 구성되기에 동성애자의 젠더 정체성은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것으로 재현되는 경향이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 남성성/여성성 테스트 및 토론

02

한국사회의 성문화와 섹슈얼리티의 이해

한국사회의 성문화와 섹슈얼리티의 이해

최지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섹슈얼리티는 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정체성.

섹슈얼리티란 주어진 시공간에서 성별, 계급, 세대, 인종/민족, 장애 등에 따른 사랑과 성의 관계, 그 관계를 규정하는 결혼, 동거, 임신, 출산 등 인간관계의 제도적 형태와 담론과 실천,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역사에 의해 구성되는 욕망과 정체성과 행위성을 모두 포괄한다. 즉 누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 문제 전체가 섹슈얼리티이다. 또한 섹슈얼리티는 인간에 의해 구성된 것이기에 이해관계와 정치적 갈등을 내포한다. 시대적, 공간적 차이에 따라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시기가 있으며 이 시기에 섹슈얼리티의 영역에 재조정이 일어난다.

2005,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전문상담원 자료집』 <한국사회의 성문화와 성폭력>, p.24

젠더? 젠더감수성?

✓젠더감수성은 젠더화된 사회를 읽어내는 눈

->우리 삶 곳곳의 젠더문제를 당연하고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가치관, 태도

✓젠더는 삶에 대한 상상력을 제한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만들기도 한다

✓성문화와 성폭력, 성차별 등 모든 것이 '젠더'의 문제

일상/삶의 방향
(성별화된 이상적인 삶)

성각본(연애문화/결혼제도 등)

몸

반성폭력 프레임



문화 산업

나/사회의 젠더감수성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나/사회의 젠더감수성은 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법과 제도

윤리/정의

성폭력에서



정치인/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

앞선 성폭력 관련 제도

10대간 성폭력

언론에 보도된 아동성폭력 사건

한국사회와 성폭력

일본군 위안부(일본군 성노예/성학대 사건)

대학내 성폭력

직장내 성폭력/성차별

★ 주말에 따로 만나자고 하기 ★ 도우미 노래방에서 회식하기 ★ 업무와 상관없는 안부 문자 자주 보내기 ★ 사무실에서 야동보기 ★ 막내가 식사시간에 수저 놓게 하기 ★ 상사의 반말 ★ 남성은 생수통 갈기 & 여성은 차심부름 ★ 남자는 힘이 세야지/경제력이 있어야지' 발언 ★ '여자는 예뻐야지/어려야지' 발언 ★ 동료 외모 평가하기 ★ 성관계 경험 묻기 ★ 남자(여자)친구라고 소문내기 ★ 야한 사진 보여주기 ★ 입맞춤하기 ★ 포옹하기 ★ 뒤에서 껴안기 ★ 엉덩이 토닥이기 ★ 성매매(2차 알선) 업소에서 회식하기 ★ 안마 해주기 ★ 안마 해달라고 하기 ★ 술에 약타기 ★ 성관계 요구하기 ★ 체육대회에서 뽀빠로 게임하기 ★ 사무실에서 자위하기 ★ 스트립쇼 업소에서 회식하기 ★

성폭력 발생원인 탐색

-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은 성폭력 발생 원인을 남성의 성욕과 여성의 '부주의함' 둘 중 하나에서 유발된 것으로 규정하려는 욕구를 많이 갖고 있다.



JUST BECAUSE YOU HELP HER HOME...

DOESN'T MEAN YOU GET TO HELP YOURSELF.

sex without consent = sexual assault

DON'T BE THAT GUY.

성폭력을 둘러싼 통념을 다시 생각하기

성폭력피해자 되지 않기? 가해자 되지 않기?

- 기존 성폭력을 유발하는 성문화를 비판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미 모두가 성폭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 젠더화된 문화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 이 과정에서 어떤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지, 무엇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폭력적일 수 있는 성행동과 성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마도 가해자 되지 않기 교육일 것이다.

유형 계	아는 사람 1112(84.8)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척 162(12.3)		직장	전일제 근로자	인턴제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학교	유치 원/학 생	주변인 의 지 인	소개로 만난 사 람	기타			
	친족	친/인 척													
성인 (20세 이상)	14 (1.6)	14 (1.6)	319 (37.1)	60 (7.0)	34 (4.0)	31 (3.6)	45 (5.3)	60 (7.0)	10 (1.2)	55 (6.4)	15 (1.7)	56 (6.7)	113 (13.1)	31 (3.6)	660 (100.0)
청소년 (19세- 14세)	33 (12.5)	15 (5.7)	10 (3.8)	17 (6.4)	17 (6.4)	14 (5.3)	13 (4.9)	59 (22.3)	19 (7.2)	15 (5.7)	2 (0.8)	10 (3.8)	29 (11.0)	11 (4.2)	264 (100.0)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성폭력을 둘러싼 통념 OX

남성은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는다?

성폭력은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발생한다.

친족성폭력 가해자
는 정신이상자이다

성폭력은
낮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공창제를 실시하면
성폭력은 감소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어떤 사회적 편견이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이분화 하는가? 법/제도적 구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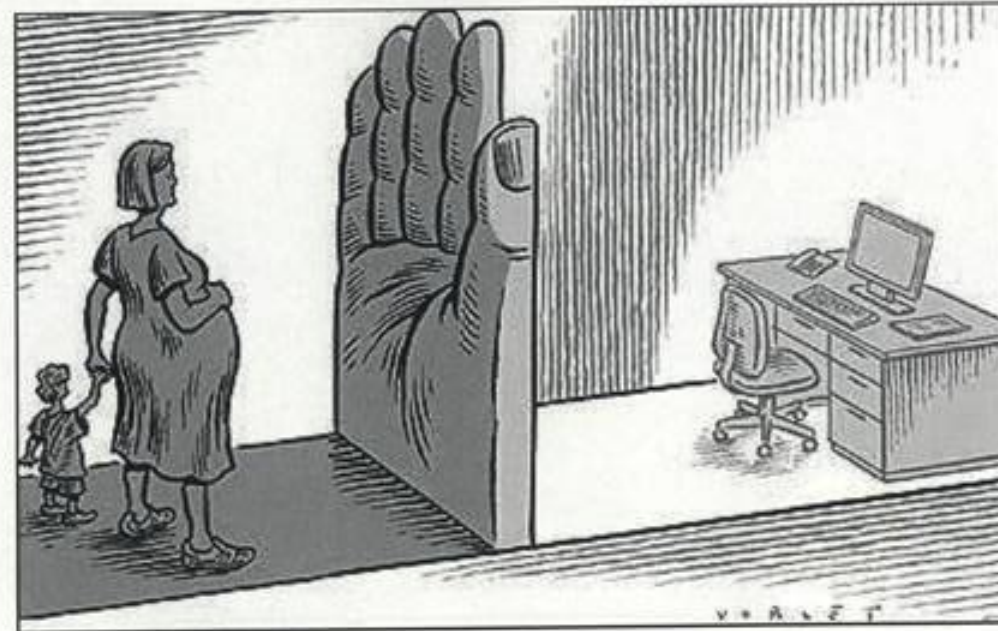
성규범에 맞는 행동을 해왔는가?
(정상적인 성인가?)

-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여성
- 순수한 피해자/여성
- 성폭력경험으로 고통받을 피해자/여성
- 성폭력을 경험해서는 안 될 피해자/여성

- 보호받을 필요 없는 피해자/여성
- 의심스러운 피해자/여성
- 성폭력 경험이 고통스럽지 않을 피해자/여성
- 성폭력을 경험할법하게 살아온 피해자/여성

이미지 출처: www.lnc.com

일터에서



이미지 출처: ottingerlaw.com

한국사회의 성평등 지수

2013년 16개 시도 대상 전국 성평등 지수 조사, 여성대표성은 100점 만점에서 14.6점

(여성신문, 2013.12.30)

2013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 성평등 순위 한국은 조사 국가 136개국 중 111위

(파이낸셜뉴스, 2013.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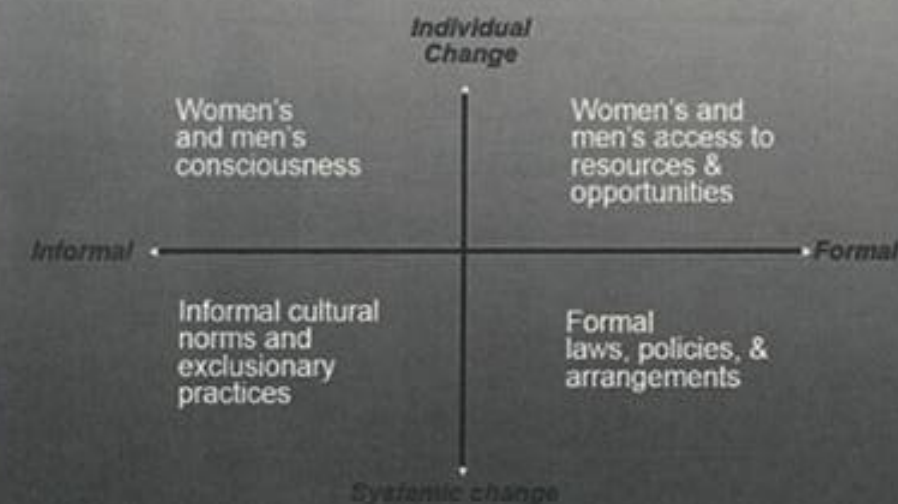
2012년 여성가족부 여성정책 수요조사

국민 75.5%가 '성차별은 여전히 문제'라고 응답

(내일뉴스, 2012.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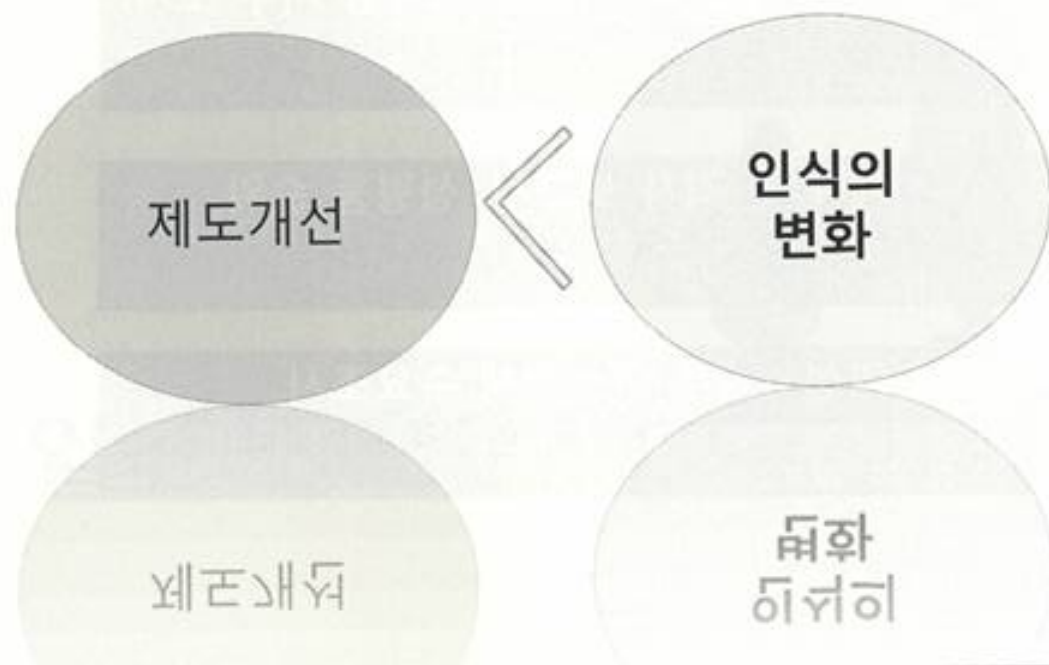
changes in the "rules of the game"

GENDER AT WORK FRAMEWORK WHAT ARE WE TRYING TO CHANGE?



이미지 출처: www.genderatwork.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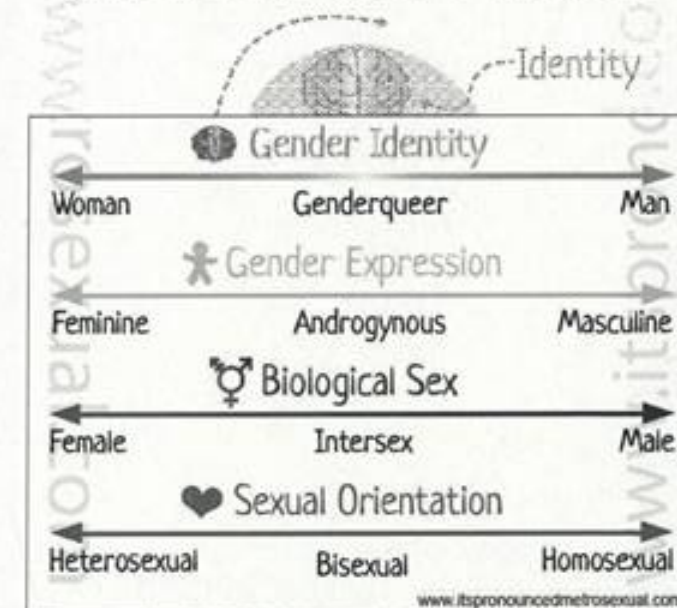
여성 고용률을 높이면 성평등이 이루어질까?



성교육에서



Genderbread Person



이미지 출처: <http://itspronouncedmetrosexual.com/2011/01/01/figuring-out-the-binary-gender-explained-using-continuum/>

젠더화된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

- 젠더고정관념을 깨지 않는 성교육은 성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시킨다.
- 전형화된 이미지의 성폭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예방교육에서 여성들을 향한 메시지는 '막연한 불안을 갖고 타인을 경계하는 행동을 취하라'에 가깝다. 이것은 여성들이 스스로 성폭력 상황에 이르지 않게 하는 힘이 없다거나, 여성들은 성폭력 상황에서 대응할 수 없다는 생각만 견고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ALICE CURTE SEXO CASUAL.
VÁRIAS AMIGAS, NO ENTANTO,
DIZEM QUE ELA "NÃO SE DÁ
O VALOR."



ALICE SABE QUE SUA
VIDA SEXUAL NÃO TEM
NADA A VER COM SEU "VALOR".

Carol Rossetti

Mariana sempre adorou ir à praia.
Mas, de vez em quando, ela começou a ouvir
uns comentários maldicos sobre seu corpo, e até
sugestões que deveriam um maquiagem e biquíni.



Mariana, seu corpo não é objeto de decoração
e não tem como função agradar o olhar alheio.
Vai pra praia de jeito que você se sentir bem.
Quem não gostar do seu visual pode sempre
olhar pra outro lado. Vai lá e aproveita.

BABI TEM SETE ANOS. SEUS PAIS
ACHARAM ESTRANHO QUANDO ELA ESCOLHEU
FAZER KARATÊ AO INVÉS DE BALLET.



BABI,
AS CONVENÇÕES CULTURAIS DE GÊNERO
NÃO DEVEM LIMITAR SUA IDENTIDADE.
VOCÊ PODE FAZER O QUE QUISER!

Carol Rossetti

여성주의 자기방어 = 다른 몸 되기

- 여성주의 자기방어는 취약한 몸으로 하는 최소한의 대응이나 알아서 피하기가 아니라 '젠더화된 몸을 거부하는 것'이다.

가족에 대하여



사회

'계모 시간' 티질 때마다...새엄마들은 숨죽여 온다

부모 '아동 학대' 95%가 친부모인데 잘못된 일 관내도 "새엄마라..." 주권 시선 공격이 날릴래 "숙원이" 민법상 "동거인" 지내 등본도 못 해 "계모에만 집중해 학대 인정 못 돼"

"새엄마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신여왕, 백설공주, 동화책에 나오는 계모처럼 나쁜 여인 받아들이고, 내가 낳은 아이와 낳지 않은 아이를 똑같이 대해도 주변에서는 말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어. 아이는 정말 보나 아들이 아냐요."

15일 '새엄마'를 모으는 한 모임에서 한 카레에는 이혼자랑 고만들이 몰려왔다. 또다른 집에도 고만을 찾아냈다. "저도 새엄마인데요. (언론에 '나쁜 새엄마' 매거지가 보도될 때는) 혼날 일일 텐데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새엄마라서 그랬다고 할까 봐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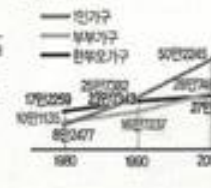
결혼을 다시 거절할 무한 재혼 거절의 새엄마들이 최근 경북 김천과 울산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남쪽은 모르는 미혼고성을 하고 있다. 공공관계도 두 시간 모두 미혼고성(계모)가 학대의 주인라 계모에 대한 주변의 편견과 낙인찍힌 시선이 한층 강해졌기 때문이다.



서울 1인가구 85만... 30년간 10배 늘었다

국립일보 11월 11일 기사입력 2013 11 20 23:18

서울시 1인부부전부인가구 추이



서울 1인가구가 지난 30년 간 10배 이상 늘어나는 등 가족 형태가 크게 다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종합 분석해 관련 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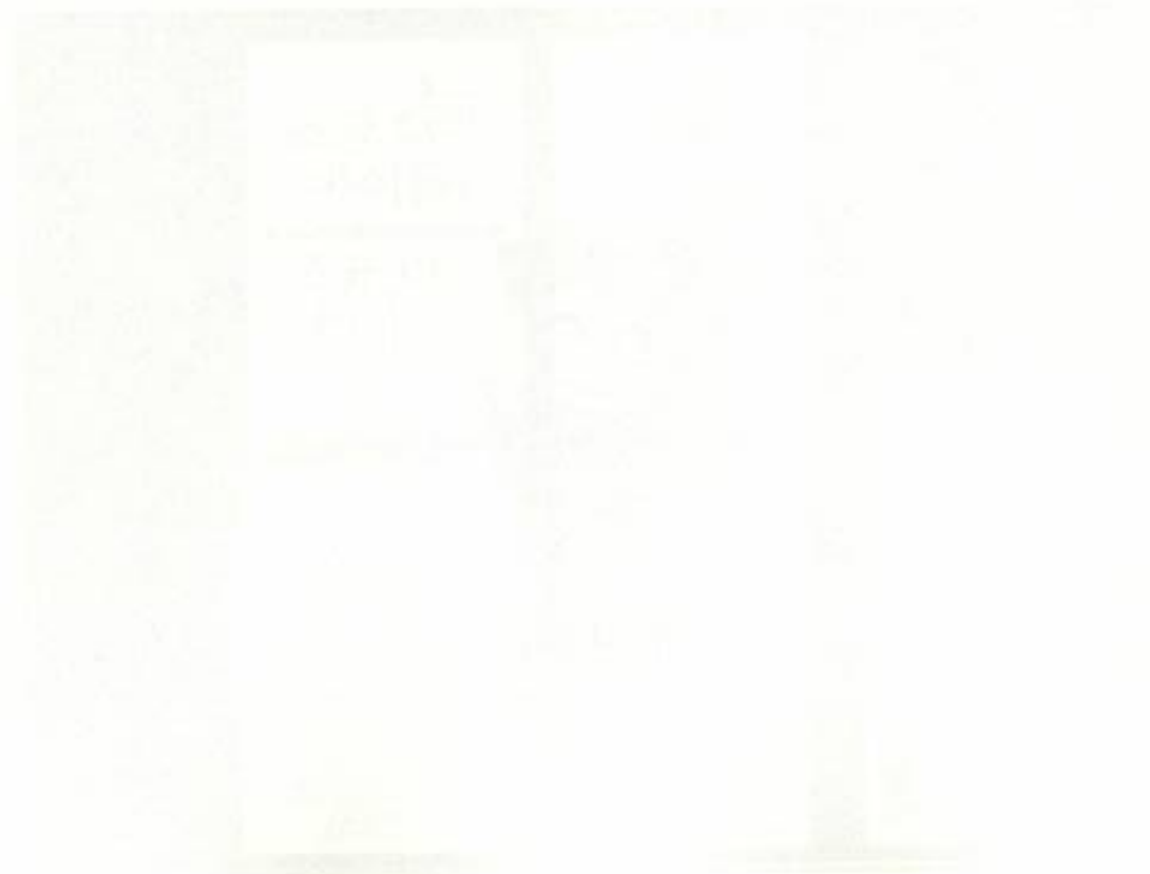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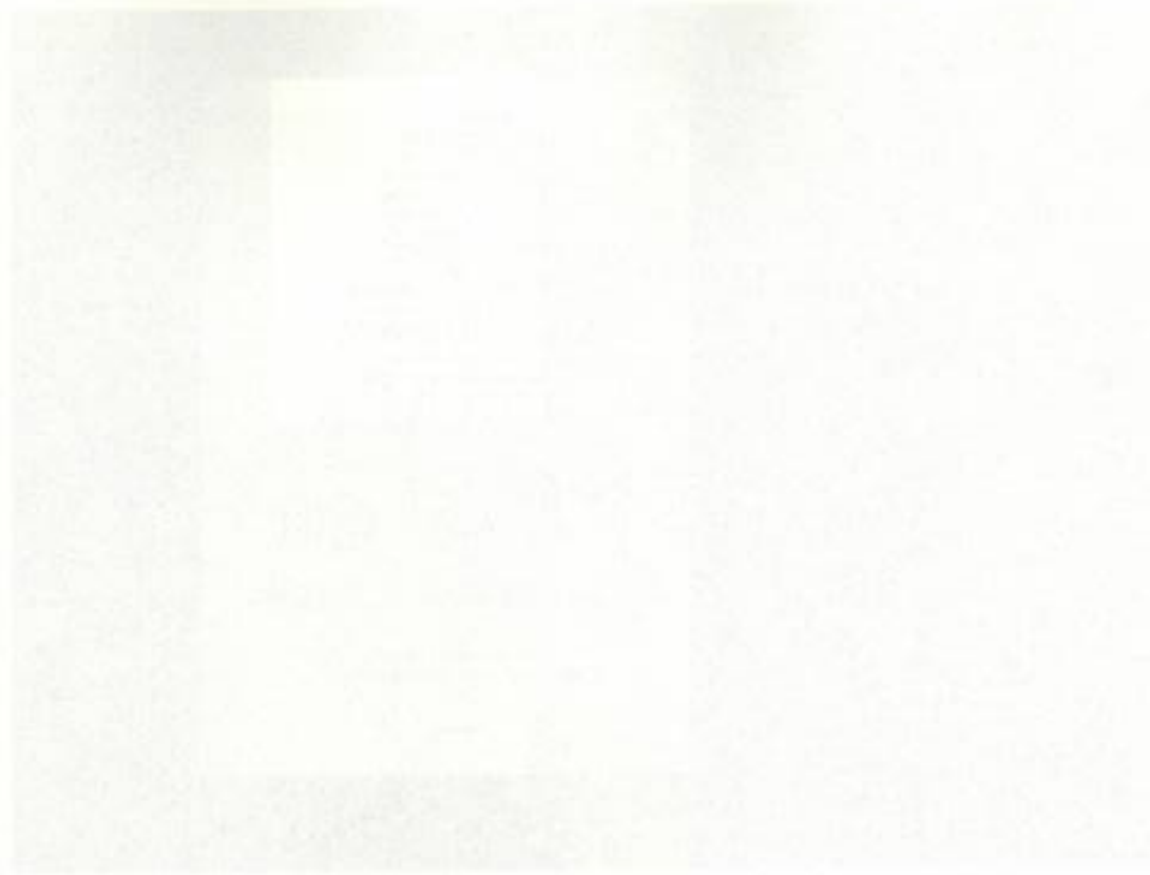
시는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내 거주 1인가구가 1980년 8만2477가구에서 2010년에는 85만4606가구로 급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0년 시내 전체 가구(350만4297가구)의 24.4%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부부가구)는 10만1135가구에서 42만3225가구로 약 4배 늘었고, 한부모가구는 17만2259가구에서 35만1848가구로 증가했다. 지난해 부부가구의 비율은 시내 전체 가구의 12.8%,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10.04%였다.

하지만 가족 위기를 보여주는 이혼 가솔도 크게 늘었다. 서울 전체 이혼건수는 1991년 1만2937건에서 지난해 2만17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결혼 20년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는 같은 기간 978건에서 6062건으로 20년 사이 6배 이상 늘었다.

들여다보기





03

한국사회의 젠더와 인권

2015년 연세대 성평등센터 또래상담가 교육

한국 사회의 젠더와 인권

강사 : 김신현경
(여성학 강사)

서구 및 국제법상 (여성)인권 개념의 발전

1. 국가와 인간(개인) 개념의 등장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1830)

- 프랑스 대혁명(1789) 이후 '근대국가' 및 '개인'의 개념 등장
즉, '인권'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것
- 개인들은 자연권을 누리기 위해 정치적 공동체(국가)를 형성하고, 정치적 공동체의 책임은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음
- 이 때, 인권은 국가의 요구와 이해관계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상위에 있음

2. 인간(개인) vs 여성(성차를 지닌 존재)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1830)

- 개별성에 기반한 개인과 그러한 개인들 사이에서의 평등이라는 딜레마의 발생
- 피부색, 생식기관의 차이가 개별적 느낌과 경험의 근거로 떠오름 => 백인 남성의 경험과 느낌이 평등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개별성의 기준이 됨
- 남성=man=인간
여성=woman=?
-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 : Liberty, Equality, Fraternity(?)
- 남성은 시민계약을 통해 국가/사회와 관련을 맺는 반면, 여성은 결혼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가/사회와 관련을 맺음

3. 인간(개인) 범위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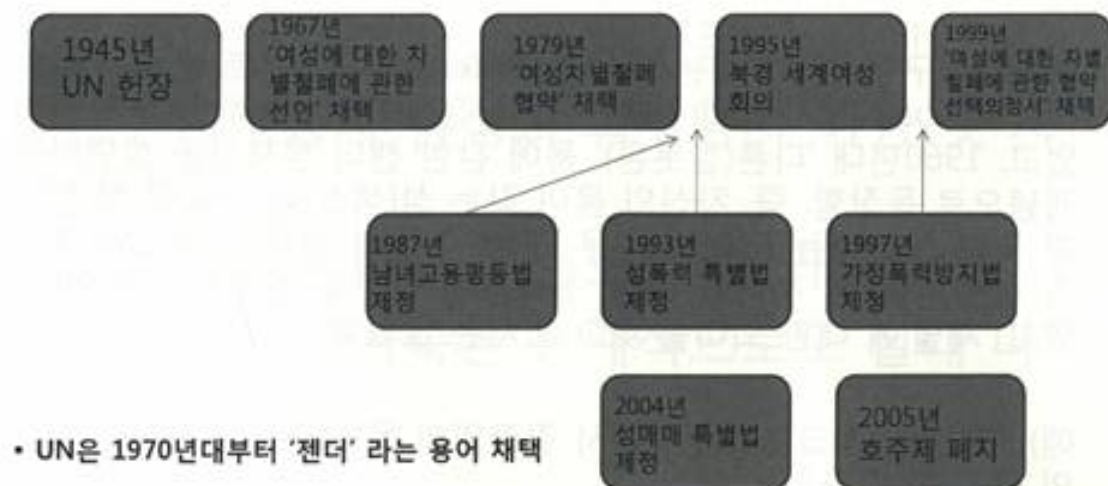


19세기 제국주의의 인종적, 성별적, 성적 희생자 사마 바르만

- 초기 유럽 남성에게 한정되었던 인권이 노동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 그 적용의 주체와 범위를 확대시켜왔음.
-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헌장의 전문과 제 1조에 포함되면서 국제 질서의 주류 프레임으로 떠오르기 시작함.

참고 :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177699>

4. 국제법상 여성 인권 보장의 발전



젠더(gender)란?

1. '성차'를 일컫는 두 가지 말

- 섹스(sex) : 생물학적으로 타고 태어난 성
- 젠더(gender) :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성

이러한 구분은 1950년대 간성(intersex) 혹은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 '환자'들과 함께 지냈던 정신의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고, 1960년대 '다른(잘못된)' 몸에 갇힌 젠더 정체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등장함. 즉, 자신의 몸이 갖는 성(섹스)이 마음의 성(젠더)과 맞지 않는다는 데에서 나온 개념. 이들의 질문은 섹스와 젠더가 불일치할 때 젠더에 대한 소속감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였고 '차별'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았음.

예)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길라임의 몸을 한 김주원, 김주원의 몸을 한 길라임

2. '성역할'(gender role)

- 성역할(gender role) : 1955년 성의학자 존 머니가 사용한 개념으로, '생물학적 조건에 기반한 남녀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뜻함.
- 이후 여성주의 인류학자들이 이 개념을 사용해 다양한 사회의 여성과 남성의 관계, 여성성과 남성성의 관계에 대해 연구함. 이러한 연구들은 성역할이 최초에는 생물학적인 것에 기반해 발전되지만, 사회적 역할이 되면서부터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위치한다고 봄.

예 1) '슈퍼맨'과 '슈퍼우먼'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예 2) 미드 '섹스 앤 더 시티'에서 하버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변호사 미란다는 소개팅에서 왜 자신의 직업을 승무원으로 속이는가?

3. 성역할(gender role)의 성립 1)

(1) 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가족의 성립

- 생계부양자 남성과 피부양자 여성 및 자녀
- 도시 중산층을 기준으로 한 가족 모델
- 이러한 핵가족은 통계적으로도 절대 다수가 아님

1. 한국에서의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 한국의 사회운동은 1990년대 이후 '인권' 개념을 지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함.
-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정치적 약자들의 저항과 권리 중심으로 '인권' 개념 구성됨 : 고문, 양심수, 전쟁시 민간인 학살 등
- 공적이고 제도화된 영역이 아닌 비가시화된 영역에서의 폭력으로 고통받아온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음

2. '안전'과 '통치'의 수단이 된 여성인권



1. 한국에서의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의 통과를 피해자인 매맞는 아내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이 아닌 '가정보호'라는 프레임을 통해 가능했음 : 매맞는 아내는 왜 여성 개인이 아니라 가족 내 아내 혹은 어머니로만 생각되는가?
- 국가나 가족을 벗어난 인간으로서의 여성, 남성의 타자로서가 아닌 자율적인 여성에 대한 언어와 상상력 부재

3. 과정으로서의 (여성)인권

- 모든 인간의 동등한 인권을 보장하고자 할 때, 인간을 위계화하는 현재의 정치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이를 보장하는 일이 가능한가?
- 과정으로서의 인권, 과정으로서의 유토피아 : (여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자에 대한 폭력을 안전과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현재의 정치 경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 필요

성차화된 인간으로서의 남성 읽기 : 비판, 분석, 방법

04

성차화된 인간으로서의 남성 읽기 : 비판, 분석, 방법

성차화된 인간으로서의 남성 읽기 : 비판, 분석, 방법

성차화된 인간으로서의 남성 읽기 : 비판, 분석, 방법

성차화된 인간으로서의 남성 읽기 : 비판, 분석, 방법

성차화된 인간으로서의 남성 읽기 : 비판, 분석, 방법

성차화된 인간으로서의 남성 읽기 : 비판, 분석, 방법

04

성차화된 인간으로서의 남성 읽기 : 비판, 분석, 방법

성차화된 인간으로서의 남성 읽기 : 비판, 분석, 방법

권김현영(대학강사, 여성학)

1. 들어가며

몇 년 전에 이런 농담을 들었다. “당신은 난파되고 있는 배에 타고 있다. 뱃머리에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구명보트가 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때 각 나라 남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될까? 만약 당신이 프랑스인이라면, ‘공화국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면 된다. 영국인이라면 ‘기사도의 명예를 걸고’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러시아인이라면? ‘노후 연금을 보장해줄게’라고 말하면 바로 달려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정답은 “군대면제 시켜줄게”였다. 한국의 젊은 남자스포츠선수들에게 그토록 승리가 중요한 한 영국인 앵커의 질문에 “군대 문제해결”이라고 대답하는 모습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용감함과 군인다움의 가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흔들리는, 그 순간의 역설을 기막히게 잡아낸 농담이 아닌가. 이 농담이 한국 남성들의 ‘남자다움’에 대한 외국 남성들의 시선을 보여준다면, 외국 여성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편린이 있다. 역시 몇 년 전이었다. 수업시간에 프랑스에서 유학한 한 여학생은 분통을 터트리며 이렇게 나에게 질문한 적이 있다. “대체 왜 한국 남자들은 콘돔을 쓰지 않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살다온 여학생들은 입을 모아 한국 남자들의 콘돔 미착용 문제가 유학생들 사이에서 종종 화제가 된다고 했다. 한국 남자와 연애하다가 하도 사정하고 설득을 하길래 한 두번 실수한 결과 임신이 되어서 곤란을 겪는 외국 여학생들이 한둘이 아니며, 이들 사이에서 한국 남자들은 ‘공공의 적’으로 불리곤 한다는 것이었다. “아시아 남성들 중 한국 남자가 가장 마초적이면서, 가장 열등감이 심해요”라고 분석하는 이도 있었다. 뒤이어 한국의 ‘어메이징’한 성산업에 대한 증언들이 속출했고, 여자들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며 너무나 매너가 없다는 불평도 이어졌다. 한 일본인 학생은 일본인 남성들은 첫 데이트를 할 때 나와 만나줘서 고맙다는 태도로 대화를 시작하는데, 한국인 남성들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도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을지 자신들이 알아서 정하는 등 고압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다고 한다. 드라마와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 남성들의 모습에 그들은 매우 당황하고, 분개하고 있었다. 한국 남성에 대한 인상들을 종합해보면 강박적이고, 마초적이며, 열등감이 심하고, 인정욕구가 강하고 경쟁적인 특징을 띤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남자다움(maleness)이라고 부르는 일반적 특징 중 일부와 정확히 조응하면서, 동시에 완전히 반대의 특징을 가진다. 그렇다면 남자다움이란 무엇이고,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이러한 남자다움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 또한 이 한국에서의 남자다움은 보편적 남성성과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왜 그런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 글은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의 남성성과 남성 섹슈얼리티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남자다움의 개념적 전제

III 생물학의 신화

남자다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은 섹스/젠더 이분법에 의해 규정된 생물학과 사회구성론의 개념적 구분법으로 답할 수 있지 않다. 오랫동안 젠더는 해부학적, 생물학적 성별구분으로서의 섹스를 해체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오기 보다는 섹스로부터 독립적인 사회문화적 결정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젠더는 어떻게 섹스가 되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남성성/여성성에 대한 생물학적 독법이 전제하고 있는 객관성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 젠더를 분석범주로서 이해하는 방법이다. 생물학에서 이야기되어온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구분법은 매우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지식이라는 점이 최근 들어 더 많은 정보들이 등장하면 할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ex: 사회구성주의를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설명한 대표적인 사례 - 데이비드 라이머 케이스)

무엇인 "생물학적" 성별을 결정하는가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정밀 성별검사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였다. 생식기의 형태가 성별을 결정하는가? 음경/고환이 없으면 남자가 아닌가? 난소/질이 없으면 여자가 아닌가? 음경/고환/난소/질이 모두 반증 사례들을 극복할 수 없다면(고환암/난소암 환자, 음경과 질 발달 상태의 차이 등의 사례들), 성별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무엇일까? 신경생물학자, 유전학자, 의사들은 성염색체와 호르몬이 성별의 결정적 요소로 보았다. 호르몬의 경우, 남성호르몬(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의 수치상 차이가 성별을 결정한다고 본다.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의 높은 수치는 폭력성을 결정하는가? 이에 대해서도 다른 실험결과들이 등장. 테스토스테론은 폭력성의 원인이 아니라 폭력을 저지르고 그 폭력에 대한 자아/사회의 반응의 결과라는 학설이 있다. 덴 킨들톤은 10세 이전까지는 혈류량 속에 포함된 테스토스테론이 소년, 소녀 모두 동일하며 테스토스테론은 하루에도 상당히 큰 폭으로 변하는 실험결과를 발표한다. 공격성의 원인이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 뒤의 흥분 반응이라는 것이다. (kindeton&tompson, 58)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가진 소년들이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띤다는 연구도 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여성염색체가 과잉된 상태(XXY)로, 이 경우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고 생식기 크기도 작다. 이런 증후군을 가진 소녀들은 콤플렉스 때문에 남의 이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춘기에 접어들면 더욱 민감해지면 큰 싸움을 일으키곤 한다. 몬트리올 대학교에서 실시한 2009년의 연구에서는 13세 소년들 중 거부당하거나 인기없는 소년들이 가장 폭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kindeton&tompson, 448)

(명예남성-남근적 여성은 (퀴어한) '남자같은' (젠더표현을 하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 사회의 욕망의 대상으로 상상적 기표가 된 여성들(즉, 그런 여성은 없음. ex: 김치녀). 남성이 거세는 결핍을 해결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트랜스 여성의 경우), 문제는 거세가 아니라, 거세 '공포'. 이러한 거세 '공포'는 결핍을 인정하지 않는 강박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클라인펠터 증후군 케이스였던 프랑시스 옴의 경우) 한다.

성염색체(XX, XY)가 성별을 결정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반론이 등장했다.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들의 성별 결정이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터너증후군 X, 클라인펠터 증후군 XXY, XXXY, XXYY, 폭제 딜레마 XX/XY, 5알파환원효소증후군 -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지 않는 증상, 남자아이의 경우 외음부가 여성처럼 발달하다가 사춘기 때 변화, XX male 요도발열립증, 음경과 질이 동시발달, 난정소 ovotestism, 초여성증후군 XXX, 초남성 증후군 XYY 등...) 1990년 SRY gene 발견(SRY-Sex-Determining Region of Y)되면서 SRY가 고환 생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것이 성별정밀검사의 진단요소로 사용되었다가 XX염색체 구조에도 SRY가 발견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다시 미궁에 빠지고 2010년 IOC 성별검사기준에 SRY가 잠정적으로 폐지되고 참고로만 사용된다.

성별정밀진단은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성염색체 조합만 4,000여개. 이는 성별을 자기 정체성의 동일시 효과와 의지로 보는 것이 가장 낫다는 의견이 점차 널리 수용되는대로 나아간다.

III 남자다움의 사회문화적 독법

그렇다면, 사회문화적인 관습과 문법에 의해서 전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남자다움의 개념적 전제는 무엇인가?

첫째, 남자다움은 노력을 통해 성취되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즉, 유혹을 견디고 급육을 수행하는 것, 본능에 굴복하지 않고 의지(will)를 발휘하는 것 등은 전통적으로 남자다움을 구성하는 영웅적 행위로 알려져 있다. 남성영웅서사는 여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남성의 의지를 강조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고, 다른 일상인들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노력, 의지, 성취이며 이것이 영웅서사의 성공스토리와 통합되면서 가장 이상적인 남성상이 만들어진다.

둘째, 남자다움은 해부학적 혹은 생리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특성들은 남자다움이라는 능력에 다가갈 수 있는 더 최적의 육체적 환경을 제공한다고 간주된다. 모든 남자들이 남자다움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들이 남자다움을 가지는 것은 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성으로 인해 여자들보다 훨씬 용이하다고 본다.

셋째, 남자다움은 여자다움에 대한 평가절하를 통해 구성된다는 점이다. 여자다움은 남자답지 않은 것을 뜻하는 부정성의 총체로서 정의되므로 여자다움은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남자답지 못한 남자는 여자와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 사이의 위계질서로 편입되며, 만약 여자와 동일시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는 남자가 아닌 존재로 간주된다.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의 정의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 중 하나는 오토 바이닝거(1907)의 <성과 성격>(Sex & Character)인데, 이 책에서 바이닝거는 "남성이나 여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적으로'와 '여성적으로' 존재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은 본래 양성적인 성향을 모두 타고났는데, 여성적 특성은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며 이런 점을 극복해야만 비로소 남성과 여성 모두 인간답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남성의 특징은 "천재성과 도덕, 이성적 능력"이며, 여성의 특징은 "감정과 섹슈얼리티, 물질성"이다. 남자다움이 여성성에 대한 평가절하를 통해 비대칭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들들에게 있어서 지배적 남성성을 체현하는 상징적 의미로서 구축되고, 남성 동일시를 위한 전제로서 위치해있다면, 어머니-아들 관계에서의 모성은 아들 입장에서 의존성을 일깨워 남성성을 '훼손'하거나 위협에 빠트리는 위험한 존재이다. 특히 이 모성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권위있는 존재일 때 아들들이 가지는 모성에 대한 혐오와 존경은 엄청난 진폭을 가진다.

봉준호 감독의 <마더>에 나오는 어머니(김혜자 분)는 살인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을(아버지의) 법질서로부터 지키고자 거의 광기어린 모습을 보인다. <마더>의 어머니는 언제든 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잔뜩 긴장한 채 잠을 자고, 아들과 함께 잠자리에 든다. 정신적인 성장을 멈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돌봄제공자로서의 어머니는 동시에 지배자로서의 이면을 감추고 있다. 봉준호는 영화속의 성적 긴장감이 명백하게 감독의 의도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

"엄마와 아들이라는 틀을 벗으면 좀 더 잘 보일 수도 있다. 결국 그 좁은 집에 남녀 단둘이 사는 것이잖나. 엄마는 도준의 섹스를 통제하려 하고, 영화 전체를 누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나, 라는 관점으로 봐도 재밌을 거다."⁵⁾

어머니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어머니의 돌봄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아들의 취약한 위치에 대한 아들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남자다움에 대한 강박을 불러일으킨다.

"칸에 가서 '한국 모성이 이렇게 무섭다'고 했더니 폴란드 사람이 '우리나라 어머니들 몰라서 그런다'며 흥분하더군요. 옆에 있던 미국인은 '유대인 엄마가 최고'라 하고, 이탈리아 사람은 '우리는 다 마마보이'라 하고.(웃음)"⁶⁾

좋은 여자와 나쁜 여자, 혹은 마리아와 창녀 등 여성을 둘러싼 오래된 이분법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 중 성적인 것을 나쁜 것으로 그 외의 것을 좋은 것으로 나눈 결과이며, 따라서 어머니는 무성적 존재이며, 성적 존재로서의 어머니는 끔찍한 존재로 재현된다. 바바라 크리드는 남성의 여성혐오의 기원에는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불가능성에 있다고 보고, 어머니의 월경과 출산을 불결한 것으로 구성하면서 인간 탄생의 내재적 오염으로서의 여성피물, 즉 성적으로 지배적인 어머니의 이미지가 구축된다고 간파한다⁷⁾.

타자와의 관계에서 인간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의존성과 취약성이지만, 남자다움은 타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보편적 조건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고, 의존성을 여자다움의 성질로 제한한다. 남성성의 상실과 회복을 중심 가치로 둔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가정폭력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구타를 보고 자란 아들들이 이후 가정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남자다움에 대한 강박과 남자다움 속에 스며있는 여성-어머니 혐오라고 설명한다⁸⁾. 즉, 아버지에 대한 분노, 자신의 취약함에 대한 혐오, 어머니의 입장에 대한 동일시를

겪은 아들들이 성장과정에서 '남자다움'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3) 또래 남성집단에서의 관계

남자다움의 의미를 구성하는 세 번째 관계는 바로 또래 동료 남성집단과의 관계이다. 또래 남성집단 사이에서의 경쟁적인 특징은 남성 성인식 문화, 스포츠 경기, 군대와 학교에서의 경험 등에서 발견되며 국가와 민족 간의 경쟁에 몰두하는 것은 남성적 특징 중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⁹⁾. 징병제를 실시하는 한국에서 군대는 또래 남성들의 남성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군대에서의 남자들간의 관계와 폭력을 다룬 윤종빈 감독의 <용서받지 못한 자>는 군인다움과 남자다움이 얼마나 '악질적'이며 폭력적인가를 폭로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 출연한 네 명의 남자 배우들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무슨 상황인지를 바로 알아차렸다고 할 정도로 이 영화에서 다루는 내용은 군대라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듯 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고참으로 나오는 마수동은 예외적인 악마성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 군대에 잘 적응해보려는 보통의 한국 남성들이 조금만 '과잉'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임현성) 삭제된 부분 중에 마수동의 진짜 악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허지훈한테 라면 준다고 화장실로 불러서 성폭행하는 장면. 너무 수위가 높아서 결국 편집했지. 좁은 장소에서 정말 힘들게 찍은 장면이었는데, (하정우) 사실 난 마수동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 병장 태정이 어리버리한 이병 허지훈한테 전화받는 교육시키는 장면, 그렇게 '데리고 노는' 상황이 진화하면 마수동이 되는 거거든."¹⁰⁾

임상수 감독은 <바람난 가족>에서의 남자주인공 영작(황정민 분)을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인간성을 잃어가는 한국 남자의 전형적인 초상으로 그려냈다.

"제가 파악하는 한국 남자들은 일단 패배자, 일단은 2등, 그게 아시아 남자들의 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인 남자 앞에서 콤플렉스를 느낄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¹¹⁾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약함'에 대한 뿌리깊은 패배의식을 가졌고, 분단을 거치며 북한과의 체제경쟁과 서구 사회에 대한 자기증명을 해야했던 한국의 정치적 지리적 특징은 한국의 남자다움을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 남성들의 카투사 경험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군인으로서 이러한 경쟁의식과 남성적 민족의식을 잘 보여준다. 카투사로 군대를 다녀온 준식(가명, 35세)은 카투사들이 미군과 한국의 민간인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성별을 매개로 어떻게 남성중심적인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었다.

5) 문석, "봉준호 감독이 말하는 <마더> 탐험기", <씨네 21>, 2009.06.04

6) "칸 영화제 초청받고 돌아온 '마더' 봉준호 감독", 동아일보 2009년 5월 22일자 기사

7) 바바라 크리드, <여성피물>, 손희경 역, 여이연, 2008:86-88

8) 데이비드 리빙스턴, <가정폭력 남성 치유모델>, 최종수 역, 한국기독교연구소, 2002

9) 토마스 퀴네, <남성의 역사>, 조경식 역, 숲, 2001

10) 씨네 21, 2005, 11.22, <용서받지 못한 자 배우 4인> 인터뷰 중

11) 임상수, '바람난 가족을 둘러싼 3각 혈전', <씨네 21>, 2003.8.13

"매일 번당 한다고 하자나. 남자들끼리 똥치는 걸. 그게 언제 그러냐면 미군들하고 대항하면서 되게 많이 생겨 그런게. 워낙 널널하니까 특별히 훈련이 힘들어서 결속력이 생기는 건 거의 없고. ('') 나도 한번은 술먹고 애들 집합시켜서 욕을 했어. 미군범죄도 많고 미군 애들이 카투사 무시하는데 우리가 똑바로 해야 한다고 죽고 싶냐고 미군 입에서 너희 일 열심히 안한다는 얘기들으면 너희 다 모가지 판다고...그랬지. 막 소리지르고. 애국가 4절까지 미군 막사 앞에서 크게 부르게 하고."(준석)

카투사로 근무한 준석은 '못사는 나라를 지켜주러 왔다'는 미군들의 우월감에 대항해, 카투사들은 한국으로 온 미군들을 미국 사회의 실패자라고 간주하면서 개인 대 개인으로 볼 때는 자신들이 더 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문제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열등감은 카투사들을 결속하게 만들고, 그들끼리는 미군을 실패자로 취급하거나 혹은 미군 병사들을 무시하면서 미군과 한국군이라는 국가 간의 위계에 대한 문제를 인종적/계급적 범주로 다시 분류하면서 미군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하려 한다. 또한 그는 일본군 군 위안부 여성들의 희생이나 기지촌 여성살해와 같은 문제를 '열등한 국가'에 대한 자존심 문제로 해석한다. 명문대학 출신인 준석이 개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통해 미군들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한 반면, 지훈은 명문대 출신 중심의 카투사들의 연대에 별반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지훈에게 있어서 '우리'라는 의식은 미군과 함께 있는 한국 여자를 보면서 비로소 분명해졌다고 말한다.

"한번은 이태원에서 여자를 얹혀놓고는 옷통을 벗기더라고. 여자애는 많이 취해있었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여자애도 자기 좋아서 그러는거니까 상관말라고 하는데...그럴 때는 기분이 묘하지. 그런 여자애 보면 미국사람이면 다 좋나 하는 생각도 들고...(일종의 열등감 같은게 느껴지는 건가?) 열등감까지는 아니고...누가 와서 우리 꺼를 탐을 내는 거야..그런 느낌?"(지훈)

지훈은 한국여자들이 단지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군에게 끌린다고 생각하며, 한국여자들을 비난하는 동시에, '우리'를 탐내기 때문에 미군들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가지게 된다고 토로한다. 지훈이 말하는 '우리'는 한국의 남성들만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때 한국여성들은 그에게 있어서 민족 그 자체가 아니라 남성적으로 구성된 민족에 속하는 내부의 타자가 된다. 여성을 매개로 남성들 간의 적대, 경쟁, 화해가 이루어지는 구도는 남성 또래 집단의 전형적인 성적 관행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남자들이 남자와의 관계에서 권위보다는 복종을, 강함보다는 무력함을 더 자주 경험하고,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딸과의 관계에서 유약하거나 협조적이거나 다정한 태도를 더 많이 취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은 "크고, 강하고, 힘센 것"이라는 신화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성에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더 많이" "더 오래" "더 강하게"라는 세 가지 구호에 의해 강하게 동기부여 되어있다. 이 세 가지 구호는 남성의 섹슈얼리티가 여성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다른 남성과의 경쟁구도를 상상하면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성에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종종 여성에게 쾌락을 가르쳐준다는 욕구와 의무감(성행위 후 좋았냐고 물어보는 행동)과 더불어 다른 남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된다는 강박(정복의 수사로 성

관계를 묘사하거나 횡수와 시간에 집착하는 행동)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강박은 종종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박찬경의 표현을 빌자면) 일고의 반성없는 찬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요즘 영화들은 너무 강박적이고 특히 한국 영화들은 너무 마초적이다. 너무 남성주의적이고 거기에 대한 일고의 반성들도 없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한다. 폭력이라는 게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이고 장르 영화 중에 폭력을 다룬 흥미로운 작품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무 몰신적으로 폭력을 다루고, 깡패들이 판을 치고 그게 멋있어 보이고. 있어도 괜찮지만 너무 많지 않나 싶다."¹²⁾

1990년대 말부터 10여년간 한국의 영화산업 흥행 키워드는 쟁패와 조폭이 차지했다. 이 시기는 흥미롭게도 한국의 경제위기와 맞물리는데, 남성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아버지-아들, 아들들간의 경쟁이라는 남자다움을 구성하고 상속하는 연속적 측면이 불확실해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때를 맞추어 십년여의 시차를 두고 전세계적으로 남성성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 등장한 것은 물론이다.

4. 남자다움의 위기 담론과 '상치입은 남성성'

:: 근대와 남성성

젠더의 규범적 문법이 지금과 같은 이분화된 젠더 상징으로 눈에 띄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보통 19세기 후반,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지역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서로 대비되는 양성적 존재로서 형상화되기 시작했다. 근대 초, 남성들에게 근대는 남자들 간의 계급적, 신분적 차이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평등의 기회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한국 남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는데,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남성 간의 차이는 내지인 '되'를 통한 증명(친일, 군복무, 내선결혼 등등)으로만 가능했다. 특히 내선결혼은 조선 남성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의식적으로는 건드리지 않으나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조선 남성들의 지위가 여성에 빚지게 된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여성은 제국-식민지 남성 연대를 위한 상징으로 물화되었으며, 식민지 남성은 제국의 남성들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성적 계약을 문화적으로 욕망하도록 강제되었다. (채만식, <치숙>) 이광수가 제국의 남성에게 대한 사랑을 일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동화욕망으로 풀어냈다면, 채만식은 내선결혼의 여성교환 장치를 통해 내선일체에 다가갈 수 있다 해도 제국의 여성에게 정체성의 근거지를 빚지고 살 수 밖에 없는 조선 남성의 처지를 갈파했던 것이었다. 이렇듯 식민지 남성성이라는 위상은 보편의 타자로서 존재하는 여성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1980년대 이전까지 근대 조선과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남성성이란 정체성을 비롯하여 생존을 여성들에게 빌어먹던 처지. (한국의 여성들에게 상징적 남근이란 2층 양옥집에서 아파트로 이동, 김기영 <하녀>, 중동건설품과 아파트 문화) 이것이 한국의 남성들이 "열등감"이란 도화선을 가지게 된 역사문화적 배경.

12) 박찬경, "이명박 정부 끝나기 전에 우드스탁을 해보고 싶다", 2011.05.01, <텐아시아>

:: 백래쉬와 남성성의 위기 담론

1980년대 여성운동의 비약적인 성과에 위협을 느껴 남성들의 역차별 문제를 건드리며 남성연대를 규합한 로버트 블라이가 1990년 <Iron John: A Book About Men>을 펴내며 미국 최초의 본격적인 남성운동을 시작한 이래, 2010년 하비 뎀스필드는 <남자다움에 대하여>라는 책을 내면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책들의 공통점은 여성성을 잃어버리고 책임감에 짓눌린 남성들의 해방과 치유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실제로 많은 현대 남성들은 때리는 행위보다 맞는 행위에 더 익숙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에 짓눌려 자신의 여성성을 포기하고 '돈버는 기계'로 전락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탄한다.

남성성의 위기와 가부장제의 쇠퇴에 대한 담론은 여성주의에서도 중요한 변화의 지점으로 언급된다¹³⁾. 예를 들어, 한국의 중산층 이하의 대부분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족 경제를 지탱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있다. 남성들은 이제 더 이상 여자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자기 역할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며, 대중매체에서는 부인이 아이와 함께 유학을 떠난 기리기 아빠와 결혼을 못해서 외국 신부를 맞아들이는 농촌 총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루어지고는 한다. 개그콘서트의 '내가 영화값 냈으니 팝콘은 네가 사라'는 외침은 엄청난 지지와 인기를 얻고 있고, 애정남도 종종 데이트비용부담에 대한 남성들의 고충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알파걸의 시대라고 해서 모든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간 것이 아니듯, 루저남의 시대라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한순간 빈털터리가 된 것은 아니다. 노동부가 613개 사업장(2006년 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녀 근로자 고용 현황' 조사 결과 전체 임원 1만6001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613명으로 4.4%에 불과했으며, 대기업 연봉의 성별차이는 무려 2,285만에 달한다. 여전히 남성 연대(male bonding)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30대 이상의 고위직, 중산층 이상에서의 성별 차이에 대한 이야기이다.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며, 이 젊은 남성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여성들과의 경쟁에 매우 지쳐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지위에 대한 가장 보수적인 태도가 이 젊은 남성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놀랄 일이 아니다. 영화 <파이트클럽>의 오프닝은 문명에 길들여져서 월급봉투를 통째로 빼앗기고 살거나 소비사회에 적응한 남성들을 조롱하는 장면으로 가득 차 있다. 주체/대상관계에서 일어난 남성 응시의 상처는 11세기 잉글랜드의 작은 마을 코벤트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가장 자주 언급되는 예이다. 민중을 세금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던 레이디 고디바와 영주 레오폴프가 관습적인 여성성을 넘어서 여성과 전통적인 마초남성을 대비시켰다면, 그 사이에서 눈에 화살을 맞은 피평통은 젠더-계급의 주변부에 있는 남성들의 성적 비정상성을 부각하는 사례이다. 성적 유혹을 이겨낸 남성 영웅(오디세우스)의 정확히 반대편에 피평통이 존재.

이러한 상처받은 남성성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는 호주의 남성심리학자이자 남성운동가인 스티븐 비덜프¹⁴⁾는 프랜시스 수도사 리차드 로를 인용하며 '남성성의 다섯가지 진실'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카톨릭 교회의 뿌리깊은 위계질서와 불화했던 리차드 로는 남자다움은 힘

과 강인함, 권위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로가 말한 남성성의 다섯 가지 진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신은 죽을 것이다. 둘째, 삶은 힘들다. 셋째, 당신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넷째, 당신의 삶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섯째, 결과는 당신 손에 달려 있지 않다." 리차드 로는 수립과 채집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여성적 자연과의 투쟁으로부터 얻은 깨달음과 지혜가 바로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어왔다고 주장한다. 번번히 자연 앞에 무너지는 취약함, 삶의 고단함, 가족과 부족에 대한 책임감 등과 같은 것들이 남자들을 지탱해왔으며 남자들의 강인함은 (여자들의 강인함처럼) 상처투성이로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5. 남성성 연구방법과 차이 속의 남성 읽기

:: 기존 남성성 연구 비판

남성성 연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남성성을 곧 특권=지배=권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다. 특권-지배-권력이 남성성과의 동일시를 만든 이유는 젠더-계급 교차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 곧 권력과 맺는 관계의 교차성 때문이다. 96%의 폭력 가해자들은 폭력을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 (1) 권력이 있어서 안할 이유가 없거나 (2) 권력이 허용해서 해도 엄격하게 금지되지 않거나 (3) 권력이 없어 무시당했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남성들의 권력 상실의 끝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가련한 농촌 총각의 이면에는 1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감금되어 구타와 노동 착취에 시달리는 "베트남 신부의 도망"이 놓여있고, 실직한 아버지들이 상습적 아내 구타의 가해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더 빈번하게 들린다. 몇몇 성공한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서 승승장구할 때, 그 여성들에 대한 열광감을 느낀 남성들은 바로 자신 주변의, 혹은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여성들에 이 열광감으로 폭력적으로 푸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만큼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다. 특히 전세계 빈곤층의 70%가 여성이 문맹자중 66%가 여성이며 이 여성들의 90%는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된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은 68%로 비장애인 여성의 경우보다 2배 가까이 많다. 한국의 여성/남성의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대로 남성이 백만원을 벌 때 여성은 육십이만원만 벌는 것에 그친다. 상처받은 남성성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누려왔던 남성 특권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인 남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태도변화, 돌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나누는 주체성의 변화가 함께 가지 않으면 변화는 요원할 것이다.

남성성의 위기 담론은 실재로서의 남성의 정치경제적 지위 하락에 대한 진단부터 남성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위기 담론을 포함한다. 실버만에 의하면 고전적인 (젠더이분법적) 남성 주체는 (라캉적 의미에서) '팔루스 남근'이라는 오인을 통해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축된다. 남성성을 권력, 지배, 응시와 동일시하는 것은 지배적 허구로서의 남성성의 구성과정을 승인하는 것이다. (초두리, 213) 위기로서의 남성성을 호명하며 다시 전통적 남성상으로 회귀하는 퇴행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자가 아닌 것 = 곧 여성 이라고 정의되던 이분법을 따르지 않는 '다른 남자'들이 '그

13) Barbara Ehrenreich, "The Decline of Patriarchy", 1995

14) 스티븐 비덜프, <남자, 다시 찾은 진실>, 박미남 역, 푸른숲, 2011, 202-204면

남성'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남성을 보편이 아니라 차이로서 호명하는 기획들이 필요하다. 이는 곧 남성성을 보편화하지 않으면서, '위기'론에 반응('호명'되지)하지 않으면서 남성성의 구성성을 해석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 이들이 남자다움의 의미구성과정에 개입하고 새로운 실천들이 가시화될 때, 남성들의 욕망은 경쟁에의 강박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푸코의 표현을 빌자면) 자기에의 배려로, 혹은 (상호)의존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남성을 만나게 될 것이다.

:: 남성성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성차화된 남자인간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마지막으로 갈음하며 강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남성성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남성으로서의 자기동질화 과정은 젠더 이원론(dualism)이 아니라 젠더 이분법(dichotomy)의 원리로 조직된다는 것이다. 여성으로서의 자기 동질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여성주의 담론에서는 이분법으로 타자화된 여성에게 주체의 위치를 재부여하기 위해 젠더 이분법을 이원론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흐름이 있다. 남성과 여성의 환원불가능한 성적 차이에 대한 이론들은 젠더 이원론의 문제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방법론적 난제이다. 여성 연구가 주체와 대상관계의 역전, 타자의 타자성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지는 부정의 부정 등을 통해 여성 주체의 위치를 찾아보려는 다양한 이론적 모색들과 더불어 여성이라는 범주의 미래적 해체를 전망하는데까지 나아간 것에 비해 남성성 연구는 아직 제대로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무리다. 예를 들어 남성분리공간의 시공간 조직원리는 여성을 포함하면서 배제하는 구조를 가지지만 여성분리공간은 남성 배제를 가장 중요한 조직원리로 삼고 있다. 남성전용공간과 여성전용공간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상이한 이유로 구성되었고, (이성애적) 남성공간에 여성들의 출입은 금지의 형태가 아니라 고용 혹은 자원의 형태로 허용되어왔다. 남성전용공간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남자화장실에 출입하는 여자청소노동자의 존재는 문화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반대는 반발을 일으키고, 남성CEO들이 모인 전경련회의 때 여자 비서가 서류를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은 남성공간에 대한 침해로 이해되지 않으며, 게이클럽에서는 여성출입을 허용하지만, 레즈비언클럽에서는 남성 출입을 금하는 것도 공간의 성별성이 조직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남성/성 연구는 젠더연구여야 하지만, 여성/성과 같은 방식의 젠더 연구일 수는 없다. 여성/성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잊혀졌던 목소리를 복원하고 발굴하고 재해석하면서 여성의 주체화 양식을 연구하고, 여성 주체의 행위성을 맥락화시키는 작업 등은 기본적으로 보편의 타자로, 추상의 특수로 존재해왔던 여성의 위치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남성/성의 경우에는 남성 동일시의 동학과 정체화양식이 여성과는 상이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때문에 젠더 연구로서의 남성성 연구는 남성 '일반'을 인간 보편으로 상정했던 위치를 탈구시키면서 이분법과 이원론에 의거하지 않은 남성들의 목록을 다시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¹⁵⁾.

15)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중 일부를 다음 논문에 수록하였다. (권김현영, "남장여자/남자/남자인간의 의미와 남성성 연구방법", 《남성성과젠더》, 자음과모음, 2011)

05

성폭력을 말하다

성폭력을 말하다

이 임 혜 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move95@womenlink.or.kr

I. 들어가며

1. 전국 성폭력 실태

** 여성가족부,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조사는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만 19세~64세 일반국민 3,500명 대상, 면접조사로 이루어짐. (전담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 지난 1년간 성추행·강간 발생 비율 : 1.5%(10년 2.9%)
- ✓ 성폭력 피해의 30~40%가 아동·청소년 시기에 처음 발생하고, 성폭력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아는 사람에 의한 비율이 높아져서 강간의 경우 60.1%가 평소 알던 사람
- ✓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으로 1순위는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1) 성폭력 피해율

- ▶ (지난 1년) 가벼운 성추행 1.4%, 심한 성추행 0.2%, 강간미수 0.03%, 강간 0.1%, 성희롱 0.9%, 음란전화 등 27.8%, 성기노출 1.7%, 스토킹 0.2%
- ▶ (평생) 가벼운 성추행 9.9%, 심한 성추행 1.1%, 강간미수 0.5%, 강간 0.4%, 성희롱 5.3%, 음란전화 등 51%, 성기노출 21.3%, 스토킹은 1.7%

□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8가지 유형*1)의 성폭력 피해상황을 조사함.

1) 성추행에 대해 '가벼운' '심한' 성추행을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인 기준은 아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추행 행위에 대해서 일반인이 응답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성추행 개념을 제시함. 가벼운 성추행은 고의로 상대방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심한 성추행은 상대방이 본인의 뜻을 무시하고 키스, 성기 접촉, 애무 등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말함.

강간 미수는 상대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경우를 의미하며, 강간은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성기삽입)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것을 의미함.

- 성폭력 피해율은 조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각 성폭력 유형별로 1회 이상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을 통해 분석한 결과임.
- (지난 1년간) 지난 1년('12년 8월~'13년 7월)간 성폭력 피해율은 가벼운 성추행 1.4%, 심한 성추행 0.2%, 강간미수 0.03%, 강간 0.1%, 성희롱 0.9%, 음란전화 등 27.8%, 성기노출 1.7%, 스토킹 0.2%로 나타남.
 - (평생) 평생 동안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 가벼운 성추행 9.9%, 심한 성추행 1.1%, 강간미수 0.5%, 강간 0.4%, 성희롱 5.3%, 음란전화 등 51%, 성기노출 21.3%, 스토킹은 1.7%로 나타남.
 - 평생 동안의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하나 이상 경험한 비율)은 10.2%로 추정되며, 이는 10명당 1명은 평생 1회 이상의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10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율은 낮아졌음.
- 지난 1년간 성추행·강간 발생비율은 2010년 2.9%에서 1.5%로 감소하였고, 평생 발생비율도 19.6%에서 10.2%로 감소함.

2) 성폭력 피해 실태

- ▶ (첫 피해 연령) 성폭력 피해의 30~40%가 아동·청소년 시기에 처음 발생
- ▶ (피해 횟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향. 강간의 경우도 2회 이상이 45.3% 차지
- ▶ (가해자) 가벼운 성추행의 경우 여성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비율이 높았으나 남성은 아는 사람의 비율이 높음. 대체로 성폭력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아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져 강간의 경우 60.1%가 평소에 알던 사람
- ▶ (발생장소) 가벼운 성추행의 경우 여성은 주로 대중교통시설에서 발생(71.4%)하나, 남성은 21.5%로 낮은 편임. 성희롱의 경우 여성은 상업지역 28.7%, 직장 27.4%, 대중교통시설 23.4%였음.

-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는 조사대상자 중에서 성폭력 유형별로 평생동안 1회 이상의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각각에 대해 분석한 결과.

① 가벼운 성추행

- (첫 피해 연령) 첫 피해연령은 만 19세 미만이 36.4%임.

성희롱은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 없이 말이나 몸짓으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음란전화 등은 광고나 스팸전화·문자·메일까지 포함하는 음란성 문자·메일·전화를 말함.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 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함.

- (피해 횟수) 여성은 3회 이상인 경우가 37.7%로 가장 많고, 남성은 1회가 36.5%로 가장 많음.
- (가해자) 여성의 경우 가해자의 80.6%가 모르는 사람인 반면, 남성의 경우 평소에 알던 사람이 62.1%로 가장 높음.
- (발생장소) 여성인 경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이 71.4%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21.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② 심한 성추행

- (첫 피해 연령) 여성에서만 피해사례가 나타났으며, 19세 미만이 34.6%임.
- (피해 횟수) 2회 이상인 경우가 52.2%로 1회보다 높게 나타남.
- (가해자) 67.5%가 평소에 알던 사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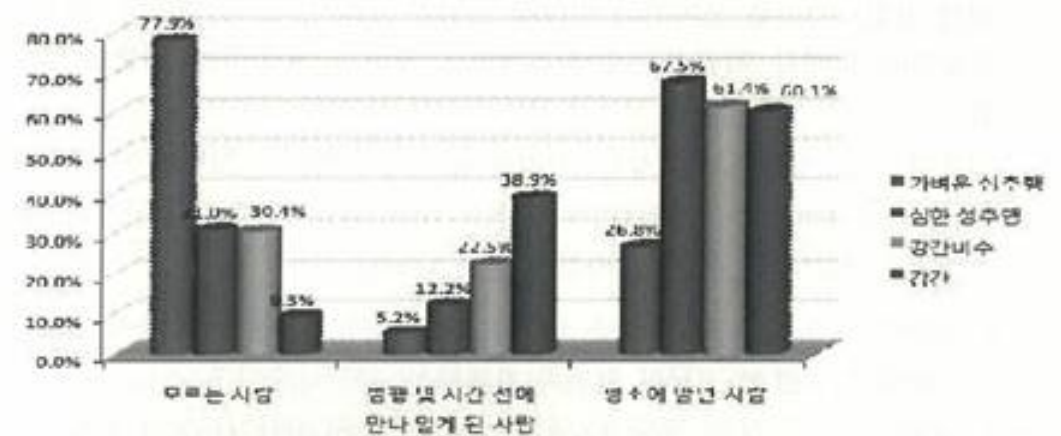
③ 강간 미수

- (첫 피해 연령) 여성에서만 피해사례가 나타났으며, 19세 미만이 30%임.
- (피해 횟수) 1회에 그친 경우가 58.7%로 2회 이상인 것보다 높음.
- (가해자) 61.4%가 평소에 알던 사람임.

④ 강간

- (첫 피해 연령) 여성에서만 피해사례가 나타났으며, 19세 미만이 39.3%임.
- (피해 횟수) 1회에 그친 경우가 54.7%로 2회 이상인 것보다 높음.
- (가해자) 60.1%가 평소에 알던 사람임.

< 성추행·강간(신체적 성폭력) 가해자 유형 >



⑤ 성희롱

- (첫 피해 연령) 여성은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68.2%로 가장 많았음.

- (피해 횟수) 여성의 경우 2회인 경우가 33.2%로 가장 많았음.
- (가해자) 여성의 경우 평소에 알던 사람이 57.1%이었고 평소에 알던 사람 중 직장상사 및 직장 동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발생장소) 여성의 경우 상업지역이 28.7%로 가장 높았고, 직장이 27.4%,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이 23.4%였음.

⑥ 스토킹

- (피해 연령) 여성의 경우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80.1%로 가장 높음.
- (피해 횟수) 여성의 경우 2회 이상이 66.5%로 가장 많았음.
- (가해자) 여성의 경우 평소에 알던 사람이 60%를 차지함.

3) 성폭력 피해 영향

- (신체적 영향) 평생동안 신체적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2.5%가 신체적 상처를 입었고, 여성의 경우 피해유형에 따라 가벼운 성추행만 입은 경우 0.2%였으나, 강간 피해까지 당한 경우에는 59.9%로 높아졌음.
- (정신적 영향) 평생동안 신체적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23.1%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고, 여성의 경우 피해유형에 따라 가벼운 성추행의 경우 19.3%가 정신적 고통이 있었고, 강간피해까지 당한 경우에는 100%가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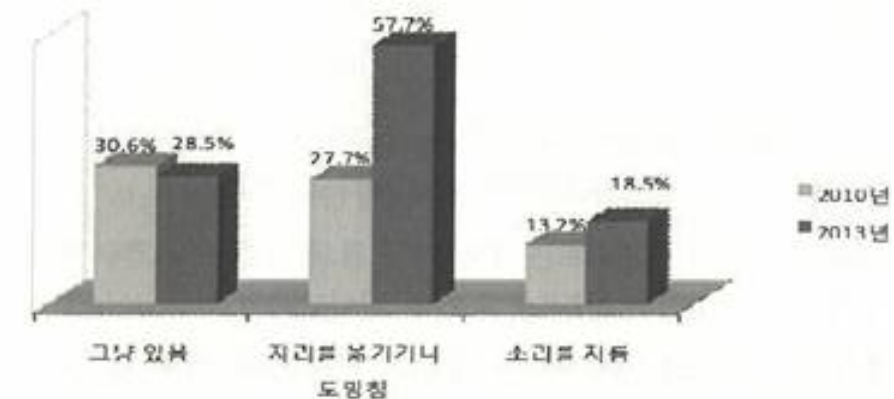
4) 성폭력 피해 대응

- ▶ (피해 상황)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침' 57.7%, '그냥 있었다' 28.5%
- ▶ 경찰이나 피해자 지원기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낮은 편.

-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여성은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침'이 59.4%로 가장 높았으며, '그냥 있었다'가 27.1%로 뒤를 이음. 이에 비해 남성의 경우 '그냥 있었다'가 41.6%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성폭력 피해 경험 당시 그냥 있었던 이유는 여성의 경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51.3%, '남이 알까봐 창피해서' 40.7% 순이고,
- 남성 경우도 여성과 같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3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여성과의 차이점은 '남이 알까봐 창피해서'는 5.9%에 불과, '그 행동이 성폭력인지 몰라서'가 42.8%로 높게 나타난 것.

- 이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2010년 조사에서는 '그냥 있었다'는 응답이 30.6%이었으나 2013년 조사에서는 28.5%로 감소하였고,
- 2010년 조사에서 '자리를 옮기거나 도망쳤다'는 응답이 27.7%, '소리를 질렀다'는 응답이 13.2%였던 것에 비해, 2013년 조사에서는 각각 57.7%, 18.5%로 높아짐.

< 2010년 2013년 성폭력 피해자의 폭력 대응 비교 >



-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대상자 중 33.4%(여성 35.3%, 남성 15.6%)는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이 있으며, 주로 가족·친척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음.
-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조사대상자 중 1.1%가 경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였고, 0.2%가 피해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직접 요청함.
- 성폭력 피해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가벼운 성추행 1.3%, 심한 성추행 5.3%, 강간·강간미수는 6.6%로 피해가 심각할수록 경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높아졌음.

5) 성폭력 및 관련법에 대한 인식

- ▶ (범죄피해 두려움) 여성의 70% 이상이 밤늦은 귀가와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에 두려움을 느낌
- ▶ (법률 인지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몰래카메라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인지도는 90%를 넘었으나, 친고죄 폐지 사실은 56.1%만이 인지
- ▶ (성폭력 방지 대책)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가 1순위

- (범죄피해 두려움) '나는 밤늦게 귀가하거나 택시를 탈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의 항목에 대하여 여성은 78.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23.2%로 나타났으며,

- 여성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의 항목에 76.3%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19.5%(매우 그렇다 포함)로 나타남.

□ (법률 인지도) '지하철,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성폭력 관련법은 96.1%가 알고 있었으며, '화장실, 목욕탕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경우 처벌 받는다'와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다'는 각각 95.0%, 91.4%가 알고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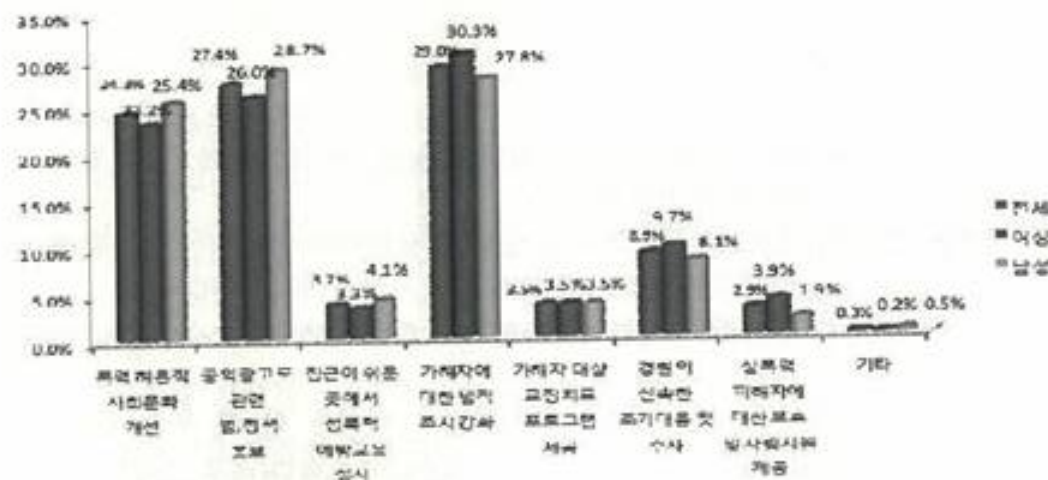
- 그러나 '2013년 6월 19일부터 성인 대상 강간죄에 적용되었던 친고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에는 56.1%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함.

- 성폭력 관련법의 인지경로는 'TV/라디오의 공익광고' 68.7%,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17.3%, '신문/잡지' 4.4%로 나타남.

□ (공공서비스 인지도) '성폭력피해 상담소'가 74.6%로 가장 인지도가 있었으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7.9%, '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43.3%, '여성긴급전화 1366' 43.2%, '피해자 국선번호인 제도' 35.2%, '성폭력 피해자의료비 지원' 31.7%,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등)' 25.7% 순.

□ (성폭력 방지 정책) 성폭력 감소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 1순위는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29%)였고,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 27.4%,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 2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1순위) >



2. 새로운 질문의 구성

- 1) '성폭력의 발생 비율 낮아짐'의 홍보, 무엇이 현실인가?
- 2) 성폭력 발생의 원인을 고민하고 있는가?
- 3) 법적 조치 강화, 답이 될 수 있을까?

: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한 이해, 즉,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 성폭력을 만들어 내는 문화, 구조적 요인들의 파악, 사람들의 태도 등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으로, 부모로서 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변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문제 발생시 피해학생과 부모가 부딪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건을 재해석함으로써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성에 대한 관점, 지식, 경험, 감정, 태도 등에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

II. 성폭력 이해하기

1. 성폭력이란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나 행동이 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성적 행위.

: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는 강간 뿐 아니라 동의 없이 몸을 만지는 성추행, 언어나 시선을 포함하는 성희롱을 모두 일컫는 것.

2. 폭력에 대한 단상

- 폭력의 법칙
- 피해경험/가해경험

3. 성폭력 관련 법/제도 변화

-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법
- 형법(95년 정조에 관한 죄 -> 개정 시 강간과 추행의 죄)

◎ '정조에 관한 죄'로 명시하고 있었던 법은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

의 몸을 소유하고 있는 남성의 입장에서 만들어져 있었던 것. '정조'(순결)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의 몸을 여성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예) 가정파괴범

◎ 성적자기결정권 : 순결의 침해 개념에서 인권의 개념으로.

1980년 헌법에서 혼인의 순결개념을 폐기하면서 성적자기결정권이 도입

◎ 성기삽입 중심성 탈피

- 94년 성폭력특별법

- 99년 남녀고용평등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 피해 지원 측면 : 200여개의 성폭력상담소와 시설(운동, 복지, 종교적 영역 등 다양한 접근)

- 인식의 측면 : 성폭력은 '나쁜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 형성

- 예방적 측면 :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성교육

※ 성폭력을 다루는 법률

- 형법 :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아동복지법 : 29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 외)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III. 성폭력을 대하는 태도 _ 누구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1. '무방비 도시 괴물의 귀환' :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분노

◎ 흉악한 범죄, 성폭력 : 성범죄를 다루는 언론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 이후 두 배 이상, 2010년에는 거의 다섯 배에 달하는 기사 수²⁾

<표1> '아동 성폭력' 관련 기사 건수(카인즈 검색)

2) 권인숙, 이화연, 2011,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 언론의 아동 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내용 중 인용

기간	기사 건수
2010.1.1~2010.10.22	930건
2009년	624건
2008년	402건
2007년	202건
2006년	232건
2005년	158건
2004년	176건

ex. 무방비 도시 괴물의 귀환, 성범죄 '괴물'이 다시 온다 '공포'

ex. '비상구가 없다' 흉악범죄 근절은 사형제 부활

ex. '그날 밤, 아이는 악마를 보았다' 끔찍했던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전말

ex. 국민 10명 중 7명, "상습 성범죄자 거세 찬성한다"

→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기사가 미치는 영향력.

2. 성폭력에 대한 이원화 된 태도 : "성폭력은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그런데....이것도 성폭력인가요?"

1) 성폭력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지만 반(反)성폭력 감수성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

: 성폭력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조두순 사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

: 가해자들의 반발

"내 행동은 조두순, 김길태, 유영철 같은 '그런' 사건은 아니다. 이것은 성폭력 아니라 다른 것이며, 이 일을 '성폭력'이라고 말하면 너무 심하다. 나는 그렇게 죽일 놈이 아니다. 나는 '정상'이다."

2) 분노를 자기 일상과 분리시킬 때 세상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 분노 '이후'가 문제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와 피해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같은 사회다. 성폭력은 예외적인 '사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적 문화' 속에서 재생산 된다.

3. 객관성

1) '객관성'의 신화

: '참'과 '거짓'을 가르는 인식론, 현실이 단 하나이며 그것은 구가 봐도 똑같다는 가정에 입각.

: '단 하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객관성'이라는 신화를 구성.

→ 그러나 인식자의 사회적 위치와 무관한, '주관'을 배제한 것으로서의 '객관성'이란 존재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 여성의 시각에서 보는 것은 '편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각의 편파성을 드러내는 새로운 인식을 산출

2) 성폭력은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는가?

ex. 신교수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문, 1994년

남녀의 관계를 '대립'이 아닌 '화합'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정도의 행위는 악의가 없었고 성적인 의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

ex. 여자농구단 감독 성폭력사건 판결문, 2007년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고통을 준 데 대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하지만 전지훈련 첫날 평소보다 많은 주량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10여년 간 국가대표팀을 이끌면서 농구계 발전과 국위선양에 힘쓴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IV. 공동체 성폭력 사건의 특징

1. 한국여성민우회가 공동체 성폭력에 고민을 갖게 된 이유

: "가해자 말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나요?"

: 성폭력 사건은 절차가 끝나도 왜 이리 찼찼할까.

: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습을 어려워하고 있음

: 주변인, 조직의 리더, 조직의 구성원들로서의 각자의 역할을 찾는 것이 필요

→ '공생의 조건' 프로젝트 진행

2.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의 특징

1)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의 유형

- 언어

- 성추행, 강간, 준강간

- 조직 내 문화와 연결된 사건들(술자리 스킨십 등)

→ 대부분 일상적인 관계에서 발생함.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있음.

→ 남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구성이 다를 망각한 채, 강제로 하는 추행이 아니라 '친밀감의 표시'로 간주, 이런 문화 속에서 감정이 쌓이고 쌓여 폭발되거나 어떤 사건에 의해 터트리지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문제제기하는 여성에게 '까다로운 여자' '플레미' 등의 지탄이 있을 뿐 왜 그런 문제제기로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지 않음.

: '이것도 성폭력이나', '별것도 아닌 일에 가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 '까탈스러운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2) 조직 구성원/ 당사자로서 생기는 갈등

(1) 구성원으로서 갈등

: 가해자도 사람이라는 당혹

가해자라는 것 빼고 너무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에게 느끼는 당혹감. 그가 인간이라면 이제 나는 '가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는지 모르겠는 당혹감. 이것은 피해자만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그 사건을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같이 느끼게 되는 고통

: 피해자의 호소에도 100%마음이 피해자에게만 안 가는 이유

: 자신은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믿음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대우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2) 조직 운영에 대한 갈등

: 조직적 해결 절차, 구성원 합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의 어려움

늘 상 이렇게 지내다가 사건 하나 터지면 예민해지잖아요. 지나가다 어깨 한번 치고 어깨동무하고 뒤에서 안고 하던 사람들도 그 시기가 되면 왠지 조심해야 될 거 같고. 사건 하나라도 발생하고 일이 해결되는 과정에도 전부다 예민해지는 거 같아요. 술자리도 줄어들고. 또 하나는 안 좋은 거는 회화화가 많이 되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성폭력이야.', '너 자꾸 그러면 제소한다.' 이러고. 잘 안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조직 분위기 굉장히 썩~~해지고. 대부분은 짜증스러워 하죠. 없어도 될 일인데 어떤 사람한테 짜증스러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짜증스러워 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인터뷰 내용 중)

(3) 피해자가 느끼는 갈등

: 피해자에게 폭력은 하나의 고정된 물건처럼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이고,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떠하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믿음을 훼손하면서 몸과 정체성과 일상의 경계를 침범하기 때문에 폭력의 피해자 뿐 아니라 폭력을 다루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경험

조직성원들은 대부분 그런거거든요... 리 내에서 해결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나 신뢰가 하루 이를 가면서 계속 무너지는 사례가 많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인터뷰 내용 중)

저 사람이 어쨌든 다른 사람들 보다는 나와 좀 더 같은 거고 비슷한 고민을 할 거고 믿음의 수치가 일반적인 내 친구들 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니까 아주 기본적인 신뢰자체가 흔들리는 거니까. (인터뷰 내용 중)

3.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_공생의 조건'의 의미

- 1) 성폭력을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나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
- 2) 성폭력 피해를 어떤 공적인 수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신의 고통을 해석하고자 하는 의미 투쟁. 공론화 과정에서 피해자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행실과 몸가짐과 조심성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간주하고 그런 인식을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권력의 문제라고, 피해자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지나치게 무감각한 것이라고, 농담/칭찬/말실수니까 봐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비하/모욕/대상화/굴복시키려는 행동을 '정상'이라고 용인해 온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바로 이러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 3) 피해자/가해자만이 아니라 주변인, 동료, 친구, 리더 등 공동체의 구성원이 성문화, 성의식에 대한 성찰하는 기회, 성별권력관계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공동체의 변화를 지향

V. 성폭력 발생 원인

1. 성폭력 왜? - 가해자 답변

: 한 순간의 성욕을 참지 못해서, 주체할 수 없는 욕망 때문에, 욕구불만 때문

에, 순간의 실수로, 성충동 때문에, 자제를 못해서(나를 이기지 못해), 이기적이라, 야동 때문에, (술 때문에)...

여성들의 무모한 노출, 여자가 야한 옷을 입었거나 유혹하기 때문에, 밤 늦게 혼자 귀가해서, 여자들이 자기 관리가 안 돼서...

2. 성의 이중적 가치개념(성별화된 사회구조)

: 성에 대한 사회화 과정의 차이

: 소극적 여성/적극적 남성 등 고정화된 성역할(나약함은 열등한 가치, 지배와 통제의 과시)

: 성관계와 성폭력을 구분하지 않는 문화

3. 성적의사소통을 막는 / 권력

: 성별, 나이, 직급, 물리적 힘, 경제력, 학력 등 수직적 구조의 문제

: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 어려움

: 동의의 기준 차이

4. 왜곡된 성문화, 잘못된 통념

▷ 남성의 성은 충동적, 남성의 성욕은 무죄 : 순간적인 욕정을 못 이겨...?

▷ 모텔에 같이 간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성관계를 동의한 것?

▷ 여성들의 야한 옷차림, 노출 = 나를 유혹한 것?

VI. 나가며 -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성문화와 권력관계로부터 생기는 것.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성폭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사회가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받아들여 온 폭력적 문화와 성차별적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야 위해 노력하고 성찰해야 한다.

가. 성폭력적 성문화 벗어나기

▷ 성폭력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전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 필요

▷ 성폭력은 조금 난폭한 성행동이나 성관계가 아니라 타인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성적 폭력이고 범죄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06

데이트 (성)폭력의 이해와 대처

How to make our community better

데이트(성)폭력의 이해와 대처

연세대 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무차장
송탄희

How to Make

Our community
Better

Contents 목차

01 성폭력의 이해 02 성적 자기결정권 03 F언어의 상담실 04 데이트폭력 대체방안

한국여성의전화

소개

■ 폭력 없는 사회를 꿈꿉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고
성평등 사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을 합니다

■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꿈꿉니다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여성들과
모임을 결성하고, 지역의 정책과 행사를 성인지적으로
바라보는 모니터링 활동과
다양한 성평등 문화활동을 진행합니다

■ 사람을 꿈꿉니다

교육시스템 E.L.F(Empowering, Leadership,
Feminism)를 통해 전국에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상담전문교육과
대중교육을 통해 여성주의 의식향상 및
개인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마포공작소 공방학교)

20대를 위한
실용연애특강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FIRST STORY

성폭력의 이해

한국사회 여성폭력의 현실

■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53.8%

2010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포함
신체적 폭력만 6가구 중 1가구 발생

■ 신체적 성폭력 피해 발생률 19.6%

2010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5명당 1명은 일생을 사는 동안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피해 입어

■ 1년간 성매매 추정건수 4,605만 건

2010년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인구 약 5,000만 명

FIRST STORY

성폭력의 이해

한국사회 여성폭력의 현실

■ 2013년 한해 최소 123명의 여성 살해 당해

한국여성의전화 언론보도 사건 분석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의해 살해

■ 최소 452명, 미수 포함 65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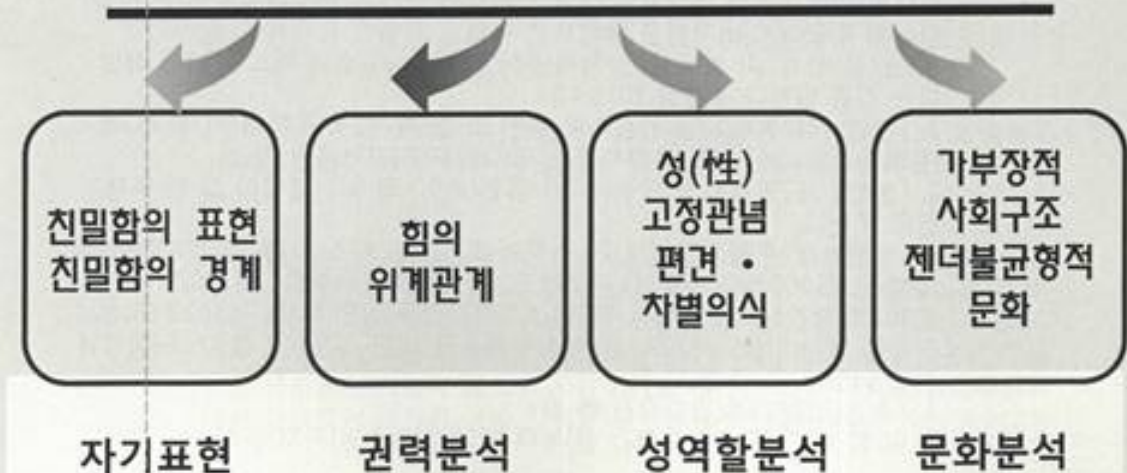
2009-2013년, 5년 누적 건수
최소 452명, 미수 포함 655명의 여성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
가족 등 지인 포함 797명

FIRST STORY

성폭력의 이해

여성폭력의 발생 맥락

성차별적인 문화와 인권 및 젠더 감수성의 부족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 개념정의 과정: '광의'의 성폭력에서 '협의'의 성폭력으로
- 여성운동진영: 성폭력=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 정조의 죄라는 전통적 문제들과의 단절. 가부장주의적인 의미구성 해체
 - 성폭력의 적용 범위가 강간이나 추행을 넘어 좀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는 것.
- 한국사회 법률상 성폭력의 개념.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정의를 누락시키고 성폭력 범죄로 바꿈. 성폭력을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형법상에 규정된 성범죄 행위들을 단순 나열하는 것에 그침.

성폭력의 개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성폭력의 개념-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2.12.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후략>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함정

•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체는 성적으로 자유롭고 자신의 신체와 성적인 삶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성적으로 자율적인 여성'이란 주체성과 양립하지 못함.

• 자유주의적인 법·권리 담론의 한계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과 그 침해가 가해자-피해자 개인의 권리충돌의 문제로 왜소화되고 성폭력의 구조적 차원이 시야에서 소실.

• 사회적 통제와 개인적 자유의 한계를 둘러싸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대치하는 국면이 펼쳐지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입각하여 성폭력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성주의 문제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는 입지는 좁아짐. 보수주의는 특정 성도덕을 규범으로 절대화함으로써 개인들의 성적 자유와 자율성의 자리를 남겨놓지 않으며 자유주의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절대화함으로써 상호적인 관계의 규범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

'거부'의 재해석

• '거부':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가 성폭력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남성성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섹슈얼리티와 욕망의 형식을 강화하고 여성들이 성적 주체화와 자율성의 거리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 거부라는 기준은 모든 해명의 책임을 피해자 여성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전가하게 만들. 여성의 침묵을 무언의 동의로 가정하게 만들.

• 성적 자율성의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혐오감, 분노의 감정은 본능적인 반사감각이라기보다는 맥락적 상황에서 해석적 행위를 통하여 도달하는 이해. 자신에게 돌발적으로 날아든 행동이 갖는 사회적 행위로서의 의미를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즉각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며 당장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은 부당함.

•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가 없으면 가해자가 성폭력이라는 걸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 존폐논란

'동의'의 재해석

• '동의': 동의의사를 표시 기준으로 강조하는 것은 최소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성폭력행위들을 문제 삼을 수 있게 됨. 무엇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였는가?

• 성적 자기결정의 권리를 마치 개인들 각자가 이미 똑같이 소유한 권리로 간주하는 자유주의 해석을 안에서 성폭력 문제는 우선 개인의 자유나 국가의 통제냐라는 자유주의 이분법적 질문 틀에 갇히게 되고 피/가해자간의 권리충돌의 논리적 악순환을 멈출게 됨.

• 성적 자율성의 침해와 성차별의 문제의식을 결합한 성폭력의 개념. 즉 성적인 자율성과 성평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성폭력의 개념 필요.

(K대여초급작소 공방학교)

20대를 위한
실용연애평감

I + You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연애, 잘 하고 있는 걸까?
대여초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중독 '부러' 서랍장까지 '부러' 되게 되고
중독이 있고 연애를 할 때는 반드시 요령이
아름답게 하면 되고, 연애를 할 때는 반드시 요령이
아름답게 하면 내 연애는 꼭 성공하고 노는 걸

1강 연애의 제도와 잘 넘어 서있어야
연애 중독과 연애 빈곤 사태에 선 서있는 남자와 여자, 연애에 대한 이야기
5월 10일(금) 6시 30분, 서울대학교 연애학과 402호



난폭운전도 폭력인가요?

지난주에 애인이랑 차 타고 가는 길에 잠깐 내려 길에서 다녔어요.
기분이 상해서 혼자 가겠다고 했더니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분으로는 같이 갈 수 없어서 싫다고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갑자기 저를 차에 밀어 넣더라고요.

그러고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사고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애인 성격이 다혈질이긴 하지만 때린 적은 없고요.

그 뒤론 애인만 보면 아직도 그 때 생각이 나면서 무서워요.
이런 상황도 데이트폭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다신 안 그러겠다더니...

애인과 저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다툼 때 크게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해서 너무 당황스럽고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네가 날 자꾸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어 애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건가 싶어 혼란스러워요.

어제 애인과 싸우던 중에 뺨을 맞았어요.

너무 화가 나 아픈 것도 모르고 그대로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전화를 해 잘못했다며, 다신 안 그러겠다며 문자를 보내네요....

실은 전에도 한 번 뺨을 맞은 적이 있는데 미안하다고 울면서 빌어서 용서해 줬었어요. 그런데도 또 다시 나를 때렸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너무 화가 납니다. 평소에는 다정한 사람이라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요.



헤어지자고 하니 돈을 달래요

1년 간 사귀었던 애인한테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안 저한테 밥 사주고, 선물 사주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냐며 그 돈을 다 돌려 달래요.

너무 치사하고 어이가 없어서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1년간 자기가 쓴 돈이 1,366,000원이라며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받았던 물건은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물건 말고 다 돈으로 달래요.

내가 만났던 사람이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었더니, 속상하고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동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요

2년을 만난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소장하고 싶다고 해서 성관계 동영상 찍은 적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해서 지우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애인이 "당연히 지웠으니 걱정 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때 찍었던 영상 기억나? 나만 보긴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너 보고 싶으면 봐야지"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나 그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하진 않겠죠?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네요.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어요

헤어지자고 한 게 충격이었을까요?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집 앞에 찾아오고, 매일 카톡을 보내면서 "네가 날 떠날 수 있을 줄 아냐, 성관계한 사실을 부모한테 알리고, 학교에 소문도 내겠다"라고 해요.

요즘에는 부모님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해서 저 때문에 부모님이 위험해지실까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놓아달라고 하는데도, 도무지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지가 않아 절망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해요

우연히 모임에 갔다가 알게 된 사람이 저한테 관심이 있다며 사귀자고 했어요. 지금은 누굴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다시 생각해보라며 매일 같이 연락을 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어쩔 수 없이 사귀게 된 지 세 달 정도 됐어요. 여러 번 만났지만 아무래도 우리 둘은 안 맞는 거 같아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죽어버리겠다고 하네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데, 헤어지면 정말로 저 때문에 죽을까봐 불안하고 겁나요



친구가 폭력을 당했어요

제 친구가 사귀던 사람한테 많이 맞았어요. 다들 헤어지라고 하는데 친구는 그럴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폭력이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애인과 만나야 한다고 약속에 나올 수 없다고 하고요. 특히 저 만나는 걸 그 애인이 싫어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헤어질 결심도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럴 땐, 연애 끝?

■ 데이트상대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상담하세요.

- 큰 소리로 호통을 친다.
- 하루 종일 많은 양의 전화와 문자를 한다.
- 통화내역이나 문자 등 휴대전화를 체크한다.
-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등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게 한다.
-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 날마다 만나자고 하거나 기다리지 말라는 데도 기다린다.
- 만날 때마다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요구한다.
- 내 과거를 끈질기게 캐묻는다.
-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한다.
- 둘이 있을 때는 폭력적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태도가 달라진다.
- 싸우다가 외진 길에 나를 버려두고 간 적이 있다.
- 문을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진다.

궁극적 선택인 폭력적인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괴롭히거나 통제를 하는 것
역시 폭력입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누군가를 통제하고
자신의 지배권에 복종하도록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면?

- 폭력에 단호해라!
상대의 폭력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세요. 상대가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보이며 설득하려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세요.
-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라!
부모, 친구, 선생님, 상담소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주변 사람이 피해를 겪고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또한 피해자가 안전한 상황인지 살피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주세요.
- 폭력의 흔적을 남겨라!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기록해 두고, 문자 메시지, 대화 녹음 등의 증거물도 남겨주세요.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다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거나, 피해 입은 부분을 사진 찍어두고 병원에 꼭 다녀오세요.
- 함께해라!
폭력을 행한 상대방과 단 둘이 만나지 마세요. 만나야만 한다면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세요.
- 바꿔라!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집과 학교, 직장을 오가는 시간과 길을 자주 바꾸세요.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 일단 스토킹이라는 의심이 들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싫다'는 태도를 보여주시고 절대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 타이르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알려들지 않도록 대화는 간단히 끝내세요.
-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 피해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해 두세요(사진, 쪽지, 문자, 메일, 대화 녹음 등 피해와 관련된 증거를 모두 보관해 두세요).
-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이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하는 방법도 고려하세요.
- 상담소나 경찰에 도움을 청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미약한 처벌이 나오더라도 신고하세요.
- 스토킹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처벌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우리 공동체를 더 낮게 만들려면?

-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하기
- 피해자를 고립시키지 않기. 비난하거나 피해를 가볍게 여기는 말 하지 않기
- 피해자가 무조건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기보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임을 믿기
- 경찰과 상담기관에서 도움 받을 것을 권하고, 필요 시 동행하기
- 자치규약 만들기
-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의식을 갖기 위해 노력하기
-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

07

성적소수자와 동성간 성폭력 상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성적소수자와 동성간 성폭력 상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 채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ttp://ksrc.org> / ksrcqueer@naver.com

- 사람들은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인정할 것이냐가 찬반 논쟁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논쟁은 동성애 혐오를 사회적으로 인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있어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1. 동성애에 대한 가장 흔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

① 왜 어떤 사람은 동성을 좋아하게 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정말 이 부분을 궁금해한다. 성 호르몬의 분비가 잘못 되어서거나, 동성애자가 되는 유전자가 따로 있다는 류의 생물학적 요인이 제시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정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제대로 된 애정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성폭행 등 이성에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성을 사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등 살면서 후천적으로 습득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많은 원인론 중 학계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인정받는 이론은 아직까지 없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연구들이 각각 다른 속셈을 갖고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즉, 동성애의 원인이 선천적이라고 밝혀지면 이는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것이므로 사회가 차별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이들과 동성애의 원인을 밝혀 일찍부터 그 원인을 제거해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만들고 싶은 이들 간의 경쟁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결국 과학적 접근이라고 하지만 이미 왜 이성애자가 되지 않고 동성애자가 되었는가라는 전제를 깔고 있으므로 분석은 항상 무엇인가가 결핍되고 부족하고 뒤떨어서 동성애자가 된다는 식의 결론으로 향한다. 그러므로, 이 의문에 좀 더 분명한 답을 얻고 싶다면 이런 질문을 먼저 스스로 던져보면 된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성을 좋

아하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 첫 번째 의문에 답도 찾을 셈이다. ‘왜 어떤 사람은 동성에게 끌리는지’는 ‘어떤 사람은 이성에게 끌리는’ 것과 같은 원리이니까.

② 동물들도 동성애를 할까?

물론이다. 최근 점점 더 많은 생물학자들이 동물과 그리고 식물에서도 동성애(동성 간의 유대, 애정, 성행위 등)를 발견할 수 있다는 관찰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진화론자들도 어떻게 2세를 출산하지 않는 동성애자들이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유전자가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 놀라워하며 동성애가 반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종족의 보존과 진화에 담당하는 역할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동성과의 섹스를 하면 동성애자가 되나?

흔히 동성애자를 동성과 섹스하는 사람 정도로 상상한다. 하지만 동성애자는 동성과 섹스를 즐기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며, 동성과의 우연한 성관계로 인해 동성애에 빠지게 된 것도 아니다. 동성과의 성경험이 있는 이성애자도 있고, 동성과의 성경험이 한 번도 없는 동성애자도 있다. 다시 말해, 성적 행동과 성적 지향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성적 행동이 성적 지향을 결정짓지도 않는다. 이 지점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누가 이성애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성과의 성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후, 성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해서 “넌 아직 이성애자가 아니구나” 라고 결론을 내진 않는다. 이와 같이, 누가 동성애자인지 여부도 성경험 유무로 따질 수 없다. 한 번의 성행위가 갑자기 이성애자를 동성애자로 만들거나 동성과의 성경험이 있어야 진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동성애자의 수는 얼마나 되나?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인구는 몇 명이나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정확한 대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구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펼치는 방법밖에 없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돌릴 설문지의 내용과 설문 조사 방식 등에 따라 인구수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설문지에 ‘당신은 동성애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동성과 사랑을 나누긴 하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되며, 설문지에 ‘당신은 동성과 사랑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 사랑이 어떤 감정과 행동까지를 포함하는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질문 문항을 뽑기도 어렵지만 이 조사가 익명으로 진행될 것인지 실명으로 일대일 면접 방문으로 통해 실시될 것인지에 따라서도 파악되는 숫자는 달라질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국 그 사회가 얼마나 성적 다양성을 ‘인정’ 해 주는가

에 따라 동성애자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수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2.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이성애주의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에서 『정신진단분류편람』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1975년엔 미국심리학회도 미국정신의학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나아가 미국심리학회는 동성애에 편견이 있는 단체에서 성적 지향을 억지로 바꾸려는 치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적 지향이 사회적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음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1992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국제질병분류 ICD-10을 통해 “성적 지향은 정신적 장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재차 명시하였다.

○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애정적, 육체적 끌림을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라고 한다. 동성에게 끌리는 성적 지향, 이성에게 끌리는 성적 지향,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끌리는 성적 지향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엔 성적 끌림을 특별히 느끼지 않는 무성애 개념도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스스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성 정체성(sexual identity)이라고 한다. 성 정체성은, 동성애자(homosexual), 이성애자(heterosexual), 양성애자(bisexual), 무성애자(asexual) 등으로 말할 수 있는데, 자신이 누군가에게 끌리는지를 반복 인지하고 검토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친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이성애만이 정상이라고 믿는 이성애중심주의(heterosexism)와 동성애 혐오증(Homophobia)의 산물이다. 동성애 혐오는 “동성애나 동성애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공포, 혐오감, 두려움 또는 그러한 감정에 기초한 태도”를 말한다.

이런 동성애 혐오는 동성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움 때문이 아니라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과 같은 전통적 성역할이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이거나 자신도 동성애자가 되어버릴까를 두려워하는 데서 비롯한다. 이는 이성애주의와 연결된다. 이성애주의란 오로지 이성애만이 정상이며, 이성애 이외의 성적 행동이나 정체성, 관계, 공동체 등을 비정상적으로 간주하고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다. 인간이란 여성과 남성, 두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믿음은 남성우월주의적 태도와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시키는데, 누구든 사회-문화와의 상호작용 내에서 이성애주의를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배

우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자들은 성적 지향을 한 개인의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상호 작용한 결과로 본다. 대부분의 경우 성적지향은 성적인 경험 없이 청소년기 초기에 나타나며, 이때 개개인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할 수는 있으나,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 성적 지향은 개인의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며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인식의 변화에 따라, 1990년대부터 각국의 인권법 및 국제법에 성적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무엇이든, 성적 지향이 동성을 향해 있건 이성을 향해 있건 간에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함축한다.

3.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태어날 때 사회적으로 지정되는 성별(신체 일부인 생식기의 모양에 따라 결정되어 주민등록상에 등재되는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성별(Gender Identity)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흔히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성전환수술을 하거나 하려는 사람으로 떠올리지만, 트랜스젠더에게 화장이나 의상 선택, 호르몬 투여, 성 재지정 수술, 법적 성별 변경 등은 선택이며 이 모든 것을 다 거쳐야지만 진짜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를 MTF(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 또는 트랜스여성이라고 하고, 반대의 경우는 FTM(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 또는 트랜스남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트랜스젠더 중에 다시 성적 지향에 따라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성애자가 있으며, 모든 트랜스젠더가 동성애자거나 모든 동성애자가 트랜스젠더 인 것은 아니다.

흔히 '왜 꼭 그렇게까지 바꾸고 싶어하는가'라고 의문을 던지며 원인을 궁금해 하지만 트랜스젠더는 갑자기 성별을 바꾸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나, 성역할을 제대로 학습 받지 못해서, 동성을 너무 사랑하다보니 성별까지 바꾸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 자신이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육체적으로 드러난 외모, 특히 성기의 모양으로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전통적인 판단기준으로 아들 또는 딸, 남학생 또는 여학생으로 나누어 부르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느끼고 인식하는 성별이 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본다면, 자신은 여성인데도

사람들은 그를 남성으로 보고 남자아이, 아들, 남학생이라고 부르고, 자신에게 그런 호칭들이 자신을 설명하거나 묘사할 수 있는 개념이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늘 어색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더군다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너는 여자니 이렇게 옷을 입어라" 혹은 "너는 남자니 사나이답게 행동해라"고 계속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채로 살아야하므로 힘이 들 수밖에 없다.

모든 트랜스젠더가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성별과 다른 육체에 이질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트랜스젠더의 경우엔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수술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기도 한다.

◎ 성별 정체성이란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이란 자신의 성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self-identification)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별 정체성은 옷, 머리모양, 몸짓, 말투 등을 통해 표현되는데, 이런 성별 정체성과 성별 표현이 출생 시 사회가 부여하는 성별이나 사회가 규정한 성별 표현방식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페니스가 있으면 남자라고 부르고, 호적상에 성별을 등록시킨 후 남자로서 살 것을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밀시와 왕따, 직장 해고 등의 차별을 가하는데, 이는 생물학적 차이에 바탕을 두고 남녀이분법으로 나눈 성역할을 지지하는 성차별주의(sexism)의 산물이다.

4.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이해

1)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몇가지 오해들

① 남성간 성폭력 가해자는 동성애자다? 아니다.

- 많은 사람들이 남성간 성폭력의 가해자는 당연히 동성애자이거나 또는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동성에 대한 이끌림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쉽게 생각한다.

- 이런 오해는 남성간의 성폭력을 '범죄'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변태적이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간주해 피해자가 자신의 고민을 주변에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든다.

- 국내외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간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거의 대부분 '이성애자'이며 동성애자는 오히려 가해를 하는 입장이기 보다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 2004년도에 <군대 내 성폭력 조사 보고서>를 낸 권인숙 교수는 조사 결과 군대 안 남성간 성폭력이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적 성 정체성을 가진 군인들에 의해 주로 행해지며, 군대 안 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은 동성애자들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위계질서와 권력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4. 4. 14 / 한겨레21)

② 동성간 성폭력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 성폭력을 '주체할 수 없는 성욕' 때문에 일어난다는 통념 때문에 남성과 여성간에 성폭력을 일어날 수 있지만 남성-남성, 여성-여성간의 성폭력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담과 신고율이 낮은 것임. 통상 이성간 성폭력의 경우 신고율은 6% 정도라고 하며 동성간의 경우엔 이보다 더욱 낮은 것이다.

- 2011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중 남성은 4.7%였고, 또한 2012년에 국회에 보고된 군대 내 성폭력 통계에는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전체 사건 중 27%에 달했다.

③ 동성간 성폭력은 처벌받지 않는다?

-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꾸준히 변해서 2013년 6월 19일에 성폭력에 관한 법률들이 일제히 개정되면서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되었다.

- 기존의 법에서는 피해자를 '부녀자'로 한정하고 동성간 강간이 인정되지 않고 동성간 성추행으로 다루어졌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피해자의 범위가 '사람'으로 성별을 따지지 않게 되어 성인 남성에게 대한 강간도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에 대해서도 유사강간죄의 신설로 기존의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처벌된다.

④ 남자들끼리만 있다보니 여자를 대신해 다른 남성을 택하는 것이다?

- 세상의 이런 편견과 달리 피해자들이 모두 여성스러운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며 가해자들도 여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남성으로 대체하는 것도 아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단순히 물리적 힘이 더 세기 때문만이 아니라 군대 내 계급이나 직장 내 직위처럼 위계에 의해 피해자가 부당한 요구를 받아도 반항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피해자의 외모를 여성적으로 묘사하거나 피해자를 여성화시키기도 하므로 피해자의 외모가 마치 '원인'인 것처럼 추측해선 안된다.

⑤ 동성끼리니까 완강히 거부하면 성폭력을 피할 수 있다?

- 이런 식의 오해들이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성폭력 신고율을 낮추어서 가해자들이 행동에 대한 반성없이 계속 폭력을 저지르게 한다.

- 모든 동성이 모두 동일한 육체적 완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같은 남자끼리 어떻게 힘에 밀릴 수 있는가라는 접근은 맞지 않다.

- 설사 평상시에 더 날렵하고 힘센 주먹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사장이 해고가 되면 한국에서의 삶이 아주 불리해지는 이주 노동자 직원을 불러 요구하는대로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이런 경우다

⑥ 같은 친구끼리의 장난이지 폭력은 아니다?

- "남자들끼리는 서로 불알을 만지면서 크다"는 옛말을 성폭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있는 말이 아님에도 크게 오해되고 있다

- 그 말은 '불알을 만진다'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있다. 즉, 친밀하고 평등한 친구 관계에서 서로 동의가 되어서 합의하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언제든지 상대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지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도 아니며, 그런 일들이 남자를 더욱 남자답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도 아니다.

- 그럼에도, 남자들끼리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명이 한 사람의 바지를 벗기거나 벗도록 강요하는 일마저도 '또래끼리의 장난'으로 넘기거나 가슴의 유두를 만지고 페니스를 톡 치는 정도의 일마저도 '남성 사회의 일상사'로 여겨 '무죄' 판결이 나는 사례도 있었다.

- 장난인지 아닌지는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이지 제 3자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⑦ 여성끼리의 성폭력은 없다?

- 여성끼리의 성폭력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다. 다만 남성간 성폭력보다 상담과 신고를 하기가 더 어려워 가시화되지 않는다.

에이즈가 동성애자의 질병이 되어버린 사연

1981년 6월 5일, 미국 연방질병통제센터(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에서 발행하는 주보(週報)에 희귀한 폐질환인 뉴모시스티스 폐렴에 걸린 다섯 명의 젊은 동성애자에 대한 마이클 고틀리브 박사의 보고서가 실렸다. 이들 중 세 명은 여러 달째 칸디다증, 발열, 체중 감소를 겪다가 결국 사망했다. 의사들은 그들의 면역 체계가 망가졌다는 건 알았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저 그들의 공통점이 동성애자라는 점에서 남성 동성애자의 어떤 생활방식이 원인일지 모른다고 조심스레 예상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런 추측도 잠시 곧 같은 증상을 보이는 혈우병 환자, 매매춘에 종사하는 여성, 평범한 중산층의 이성애자들과 아이들에 대한 보고가 잇따랐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등 지역적 한계조차 없었다. 의사들은 마침내 이 질병이 정액이나 혈액이 교환되는 성행위, 수혈, 주사바늘 공유 등을 통해 누구나 감염될 수 있음을 드디어 알아냈고, 1982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라는 공식 이름을 부여했다. 하지만 그 사이 언론에서는 '동성애자 관련면역결핍증'((Gay-Related Immune Deficiency)나 '동성애자암'(Gay Cancer)과 같은 이름을 붙여서 보도했다. 이렇게 찍힌 낙인은 지금까지도 에이즈를 동성애자들이 걸리고 동성애자들이 퍼트리는 병이란 편견을 만들고 있다.

2) 군대 내 성폭력 - 사랑은 유죄, 성폭력은 무죄가 되는 꼴

우리나라 군 형법 92조는 “계간 및 기타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2013년 3월, 국회에서 ‘계간’을 ‘항문성교’로 단어만 바꾸는 어이없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높다. 이에 그치지않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동성간 성폭력이 아니라 동성애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이 법에서 계간이란 항문성교이든 이 말 자체로는 서로 합의하에서 하는 섹스인지 폭력이 동반된 강제적 섹스인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이의 구별은 매우 중요하나 우리나라 군대는 이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상한 태도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모 부대의 중대장이 사병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당했으나, 2008년 6월 10일 대법원은 “중대장인 피고인이 소속 중대원인 피해자들의 양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장소가 복도나 행정반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이고, 범행시각이 오후 또는 저녁시간으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도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동성끼리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성적 수치심을 동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리고 가해자가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는 이성간 성폭력과 비교해볼 때 이상한 일이다. 그렇다면 결국 법은 무엇을,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것일까. 이런 부조리로 인해 군형법 92조에 대한 위헌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동성애 혐오적인 여론을 의식해 2011년 4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3)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폭력

우리나라 형법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트랜스젠더가 입은 성폭력 피해는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2013년 6월 이후부터는 상황이 다소 달라질 것이다.

1996년, MTF 트랜스젠더가 세 명의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 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외부 성기 구조가 다르며,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이 없는 점 등에서 트랜스젠더인 피해자를 사회통념상의 여성으로 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런 법원의 태도는 10년이 지난 2006년에야 조금 변화의 싹을 보여, 2009년 2월 부산지법에서 최초로 트랜스젠더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하는 판결이 나왔고, 마침내 2013년 형법 개정으로 법적 성별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었다.

5. 더 보면 좋을 자료들

만화

<IS 아이에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 로쿠하나 치요 | 손희정 | 학산문화사

<방랑소년> 시무라 타카코 | 설은미 | 학산문화사

<뉴욕뉴욕> 마리모 라가와 | 대원씨아이

단행본

* 상담가들을 위한 도서

<무지개 성 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외 / 양철복

* 트랜스젠더 관련

<네 머리에 꽃을 달아라> 김비 | 삼인

<3×FTM>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기획 |그린비

<더블 해피니스> 스기야마 후미노 지음 | 예문

* 종교 관련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 | 숨 프로젝트 엮음 | 한울

<누가 무지개깃발을 짓밟는가> 스티븐 스프링클 지음 |알마

<섹스 앤 더 처치> 캐시 루디 지음 | 박광호 옮김 | 한울

* 청소년/ 입문 이론서적

<브라보, 게이 라이프> 정윤 | 나뭇잎

<엠 아이 블루?> 메리언 데인 바우어 외 12인 |낭기열라

<후천성인면결핍 사회를 아웃팅하다> 지승호 지음 | 시대의 창

<섹슈얼리티 강의 세 번째 - 10대의 섹스, 유쾌한 섹슈얼리티> 변혜정 외 | 동녘

<동성애> 공자그 드 라로크 지음 | 웅진 지식하우스

<커밍아웃> 에릭 마커스 지음 |박영출출판사

<성적다양성 - 두렵거나 혹은 모르거나> 바네사 메어드 지음 | 이후

<남성성과젠더> 정희진,권김현영,나영정,루인,한채운,엄기호 |자음과모음

<성의정치, 성의권리> 권김현영, 루인, 김주희, 한 채운, 류진희 / 자음과모음

영화

<바비를 위한 기도> (Prayers for Bobby, 2009)

러셀 멀케이 감독 / 90분 / 미국 / 주연 시고니 위버, 헨리 제니

<트랜스아메리카> (Transamerica, 2005)

던컨 터커 감독 / 18세 이상/ 103분 / 드라마, 코미디/ 미국

<천하장사 마돈나> (2006)

이해영, 이해준 감독 / 15세이상 / 116분/ 드라마, 코미디/ 한국

<플로토에서 아침을> (2005)

닐 조단 감독/ 15세이상 / 128분 / 드라마, 코미디/ 아일랜드

<나의 장밋빛 인생> (1997)

알랭 베를리네 감독/ 88분 / 드라마 / 프랑스, 벨기에, 영국

<메종 드 히미코> (メゾン・ド・ヒミコ: Mezon Do Himiko, 2005)

이누도 잇신 감독 / 130분 / 15세이상 / 드라마 / 일본

<브로크백마운틴> (Brokeback Mountain, 2005)

이안 감독 / 133분 / 드라마, 멜로, 애정, 로맨스 / 15세 관람가 / 미국

<더 월 2. (If These Walls Could Talk 2, 2000)

마사 쿨리지, 앤 헤치, 제인 앤더슨 감독 / 18세 이상/ 95분 / 드라마/ 미국

<헤드윅> (Hedwig and the Angry Inch, 2001)

존 카메론 미첼 / 2002년 08월 09일/ 15세 이상/ 95분 / 코미디, 뮤지컬/ 미국

웹사이트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ttp://ksarc.org>

ksarcmember@naver.com

0505-896-8080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ttp://www.chingusai.net>

chingusai@chingusai.net 02-745-7942

동성애자인권연대 <http://www.lgbtpride.or.kr/>

lgbtpride@empal.com

02-778-9982

한국레즈비언상담소 <http://lsangdam.org> lsangdam@lsangdam.org 02-703-3542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길잡이 트랜스로드맵 <http://transroadmap.net/>

트랜스젠더 삶의 조각보 만들기 <http://transgender.or.kr>

별의별상담연구소 <http://878878.net>

6. 참고 읽을 거리

동성간 성폭력 '이제 말해야 한다'

[뉴스메이커] 2001-07-26

[포커스] 동성간 성폭력 '이제 말해야 한다' -가해자 대부분 동성애자 아닌 이성애자-

"나는 섹스에 관심이 없었다. 그보다는 내가 그를 상처 입히면서 힘을 느끼는 것이 더욱더 나를 흥분시켰다. 그에게 나를 빨도록 한 것은 내가 육체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굴복시키기 위해서 였다." 윤가현 교수(전남대 심리학)의 저서 에 인용된 한 남성 성폭력범의 말이다. 사회적으로 거의 이슈화되지 않던 동성간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동성간 성 폭력 피해 사례는 직장에서 '여자처럼 생겼다' 며 3년 동안 자신을 성추행해온 동성 상사를 고소한 사건 정도가 일부 표면화됐을 뿐이다. 성폭력이 '남성이 강제로 여성에게 성욕을 분출하는 것' 이라는 남 성 중심적 편견 속에서 동성간 성폭력 피해는 묻혀져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동성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 말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에 따르면 동성간 성폭력 피해 사례 접수 건수는 연 70건 정도로 전체 피해 건수의 3%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성폭력상담소의 분석이다. 사회적으로 동성간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남성끼리' 동성간 성폭력 문제가 이슈화할 만한 공간은 군대다. 지난해 10월 정대철 의원(민주당)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998년 이후 2년 반 동안 현역병들의 성범죄 건수는 강간 244건, 동성간 추행 133건을 포함해 모두 666건으로 집계됐다. 또 휴가 나온 사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0.5%가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강압적으로 요구받거나 주위에서 이를 보고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병(44.4%), 일병(20.6%), 상병(7.9%) 등 계급이 낮을수록 피해율이 높았다. 실제 지난해 7월엔 고 참병들의 성추행과 구타를 견디지 못한 육군 사병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군 제대 후 복학을 준비 중인 김모씨(25)는 "군대에서 하급자 중 일부가 고참병의 성적 노리개가 된 예는 많다"면서 "폐쇄된 공간에다 상명하복 관계에서 발생하기에 실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김씨의 말처럼 상당수 예비역 대학생들도 군 내 성폭력이 심각한 문제라는 데 동의한다. 물론 동성간 성폭력 사건이 군대나 감옥처럼 특수집단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다.

성폭력상담소 조중신 열림터 시설장은 "최근 남자 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출한 남자청소년들 중에는 유혹업소에 이른바 '빠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술집 주인이나 조직원으로부터 성행위를 강요받기도 한다"고 밝힌다. 학교 선배나 동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윤간을 당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조 시설장은 "이는 학교에서 자신의 남성 성정을 과시하는 방편으로 소위 여성적인 남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직장의 동성 상사로부터 성행위를 강요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한다.

반면 여성이 여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여성간에 육체적인 접촉이 잦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간 성희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회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어떤 행위를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봐야 하는지 애매한 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스토킹이나 통신매체를 통한 여성간 성폭력은 드물지만 여성 가해자가 나타난다. 특히 상대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집착해 배타적 관계가 형성되면 성폭력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이 반, 즉 여성 성적소수자 커뮤니티 내의 성폭력 사례를 접수해 주목된다. 이들은 6월 23일 레즈비언 커뮤니티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성폭력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여성간 성폭력 추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끼리끼리는 미묘한 문제이긴 하지만 접수된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이반 여성 커뮤니티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처할 방침이다.

동성간 성폭력 가해자는 동성애자일까. 전문가들은 성폭력 가해 남성이 선입견과 달리 이성애자인 경우가 많고 상대방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심리를 보인다고 분석한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권수현 부장은 "동성간 성폭력은 지위나 나이, 힘의 차이 등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성적 취향이나 성욕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성폭력 피해 남성들의 경우 '동성 애자에게 당했다'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된다"며 "특히 남성임에도 성폭력을 당했다는 굴욕감으로 피해자는 큰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상대방에 권력 행사하려는 심리 보여

하지만 남자아이들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당수 부모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남성다움'을 과시하는 문화에서 이를 원치 않는 남자아이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정신질환까지 앓을 수 있지만 주위에선 "그건 장난일 뿐"이라며 사소한 일로 넘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이런 시각이 보다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중신 시설장은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범의 30%가 어릴 적 성추행을 당한 남성이다"라며 "피해의식으로 인해 피해자가 후에 성폭력 가해자가 될 소지가 크다"고 전한다.

한편 형법에 따르면 성폭력은 '부녀자'에 대한 범죄로 규정돼 있고 강간의 기준도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됐는가 여부로 판단한다. 따라서 동성간 강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동성간 성폭력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법조항은 강제추행, 이마저 성희롱, 성추행보다 심각한 수준의 행위, 이를테면 공공장소에서 전라로 만들었거나 폭력을 휘두르며 추행한 경우만 해당된다.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여성계는 개정안에 여성 성기에 이물질 삽입하거나 동성간에 항문이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는 경우 등을 강간에 준하는 행위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동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성폭력을 권력(문화적, 사회적 혹은 신체

적)을 가진 자가 권력을 지니지 못한 자에게 가하는 폭력 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를 사건 중심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민우회 권 부장은 “다양성을 묵살하고 하나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강요하는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모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길명 기자 myung@kyunghyang.com

08

여성주의 상담과 성폭력 사건지원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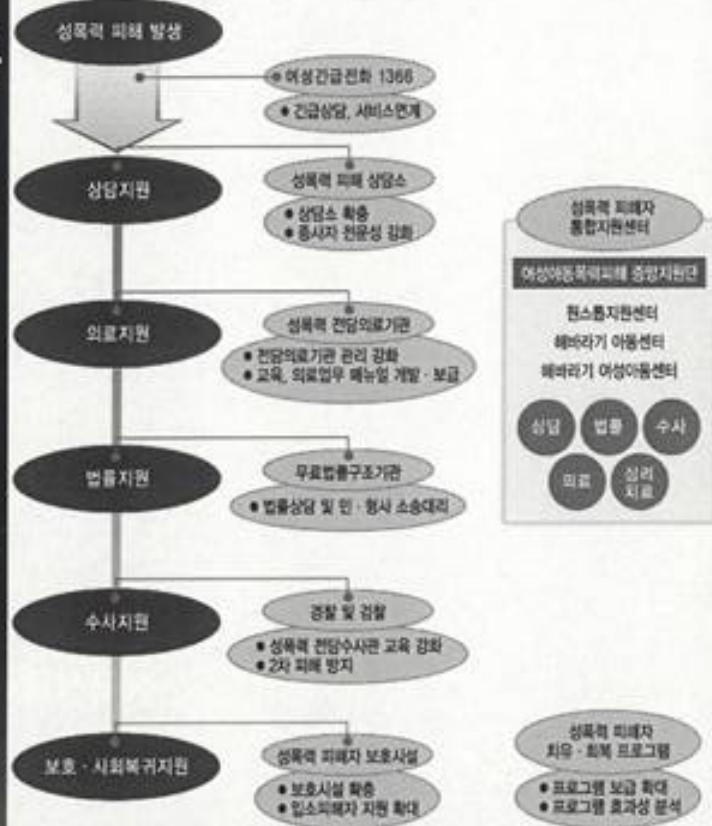
여성주의 상담과 성폭력 사건지원의 이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최란

오늘 우리는

- 성폭력 사건지원의 체계 이해하기
- 여성주의 상담 이해하기
- 실제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기

성폭력 피해자 지원 흐름도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

해바라기아동센터

- 성폭력피해를 입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의료적, 법률적, 심리적 지원
- 서울: 연세의료원 내, 3274-1375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수사, 법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 (진술녹화실 구비, 경찰 상주)
-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내, 3672-0365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

국번 없이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피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전화상담통로, 긴급피난처 운영

경찰청 117학교·여성폭력 및 성매매피해 신고센터

-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 24시 신고 접수 통로
-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원스톱센터 또는 NGO단체 연계

원스톱지원센터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의료적, 법률적, 심리적, 수사적 지원 (진술녹화실 구비, 경찰상주)
- 서울: 경찰병원 02-3400-1117, 보라매병원 02-870-1700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 (민간단체)

성폭력상담소

- 전국에 현재 총 172개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23개소) 운영.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 및 운영.
- 성폭력피해 신고, 상담, 의료기관연계, 법률지원, 성폭력 예방 및 왜곡된 성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 (민간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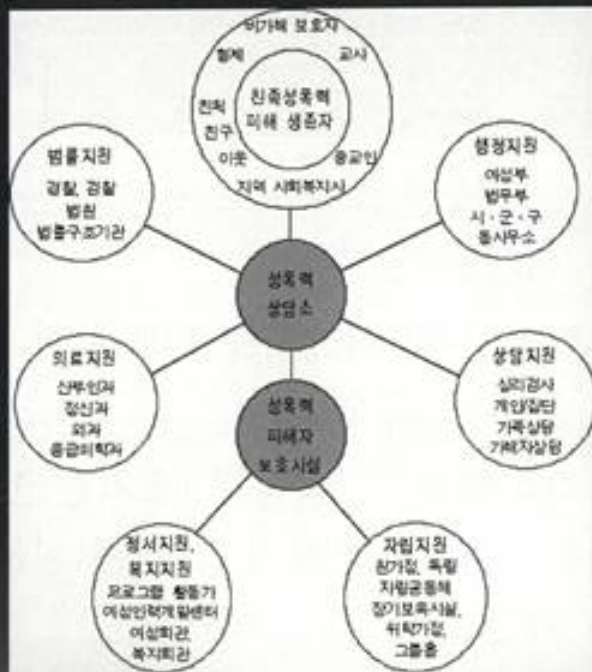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전국에 현재 총 25개소 (일반 15개소, 장애인 7개소, 특별지원2개소,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1개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 및 운영.
- 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일반시설의 경우 1년~1년 6개월, 장애인시설의 경우 2년~4년, 특별시설의 경우 19세까지 보호, 2년 연장가능), 의료 및 법률 지원, 자립자활교육 시행 및 학업 취업지원.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 성폭력피해에 따른 의료 진료의 필요성 안내.
-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기관 안내.
- 진료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안내.
- 성폭력피해자지원 지정 의료기관
: 345개소. 국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시설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통합적 지원체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 성폭력 피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생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은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성폭력 피해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금부족으로 각 지급 단체별로 일정한 지급기준이 있음.
- 구청 민원실,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해바라기 아동여성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통해 의료비 청구 및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지출한 금액에 대한 환급도 가능함. (진료비영수증, 상담사실확인서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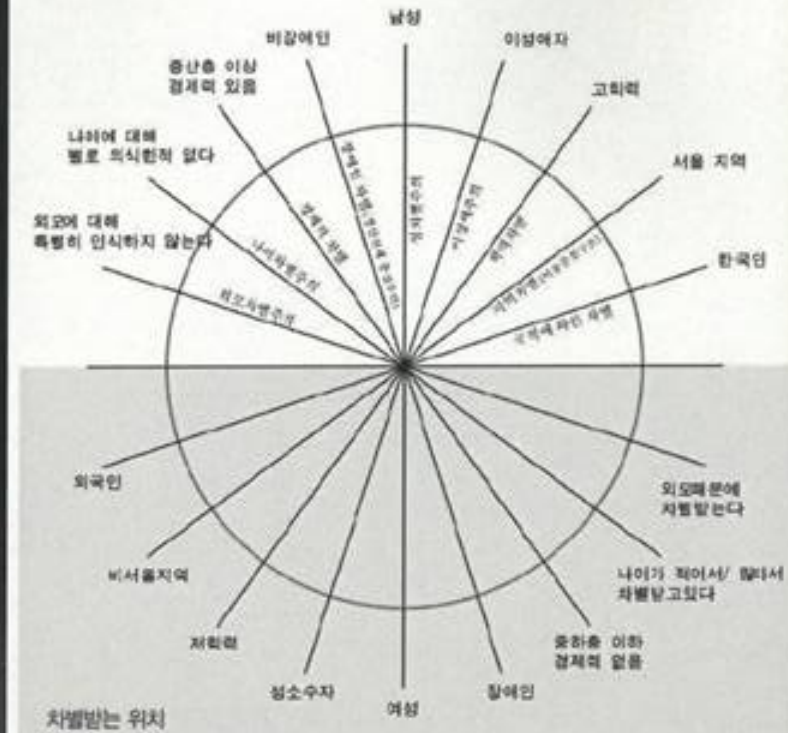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 사건의 법적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을 이해, 더 이상의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지원.
-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권리를 안내하고 피해자 스스로 고소여부를 결정하도록 권유.
-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존중 받도록 지원.
-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지원.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가능. 수사절차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 원스톱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국선전담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음.

특관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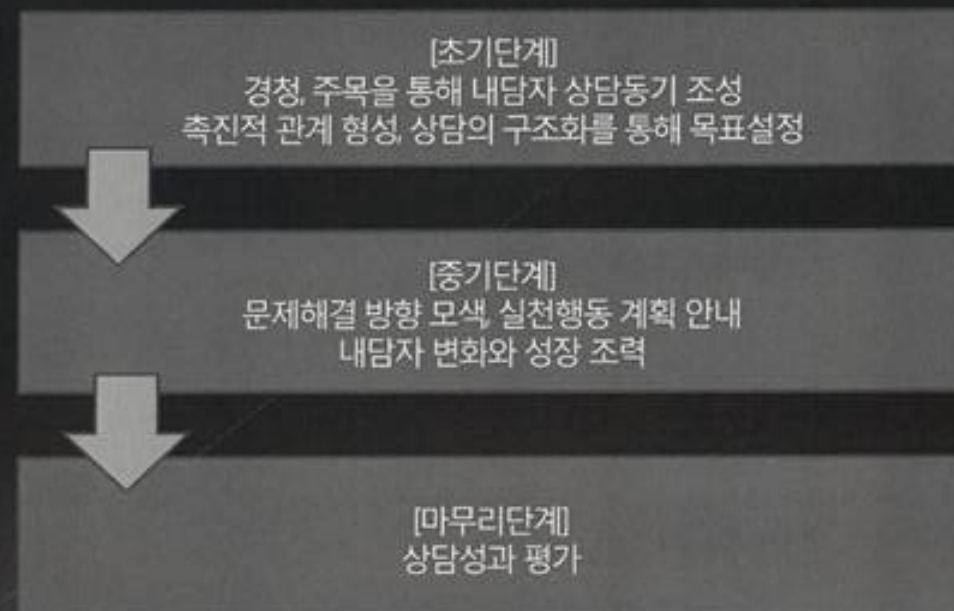


출처 : [성폭력피해자 지원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8

여성주의 상담

-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가 겪는 자책, 무력감, 고립감에서 벗어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생존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
- 여성주의상담의 3가지 원칙
 - :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
 - : 내담자와 상담자는 평등하다.
 - :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경험을 해석한다.

상담의 단계



상담 시 파악해야할 내용

- 피해자의 특성 (연령, 성별, 가족관계, 신체적 특성)
- 가해자의 특성 (연령, 성별, 가족관계, 신체적 특성)
- 호소문제 (피해사실, 현재 어려움, 도움이 필요한 지점)
- 피해정도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피해정도)
- 대처상황 (법적 고소나 학내 신고, 피해전후 경험)
- 피해자의 내적, 외적 자원 (주변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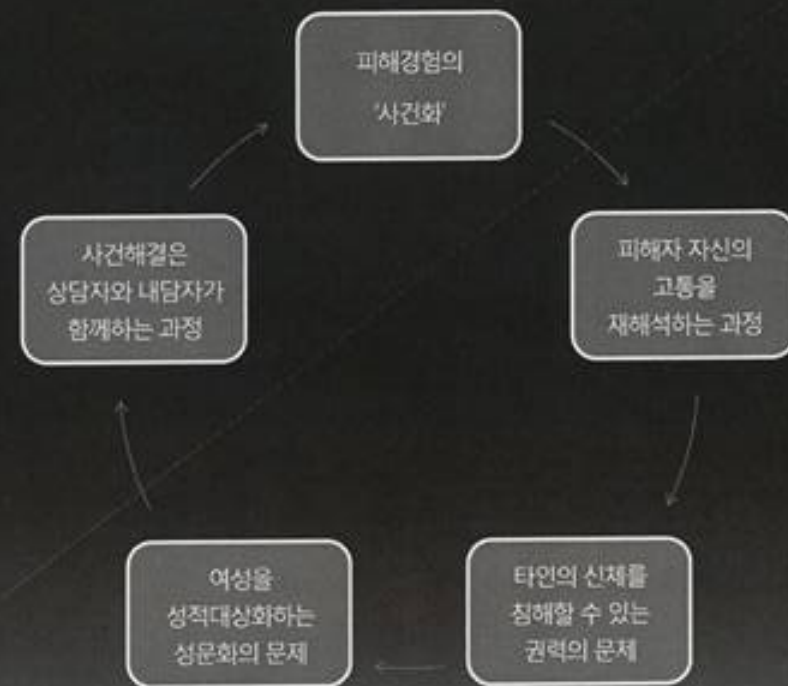
상담 구조화 하기

- 피해자의 호소문제 진술
: 어떤 일이 있었나요
- 피해자의 사례개념화
: 도움이 필요한 지점 확인 및 계획 세우기
- 피해자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지점 초점화
: 모든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
- 구체적인 대안탐색, 내담자 스스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내면의 힘(자원)을 찾기

상담 구조화 하기

- 상담지원자 반응 피드백
: 칭찬, 격려, 지지 등 내담자가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반응
- 상담지원자가 해야할 일, 도와줄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의 한계 짓기
: 지원하기 어렵거나 도와줄 수 없는 일 명확하게 안내
- 실행의지 확인
: 주변 자원 확인
- 추후상담 약속
: 정해진 요일 및 시간 안내

여성주의 상담으로 성폭력 피해 이해하기



여성주의 상담으로, 나 점검하기

- 변화하는 주체로서 피해자를 바라본다.
- 피해자와 동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
- 피해자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힘이 있다고 믿는다.
- 남성중심 사회의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의 경중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성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 성폭력은 순결이나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의 치유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제도적 틀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기-1

내가 피해자라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내가 여성주의상담을 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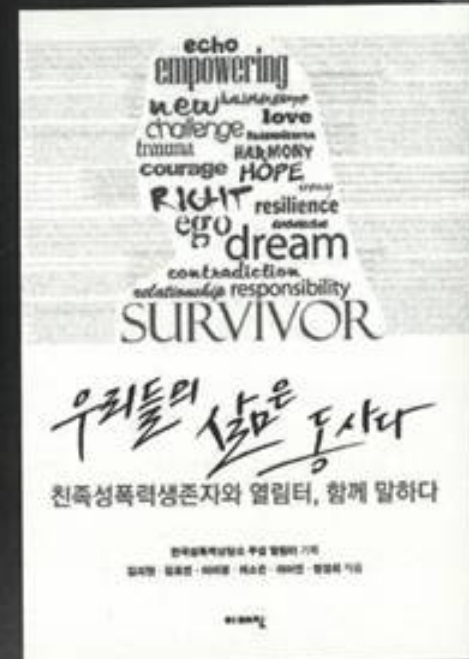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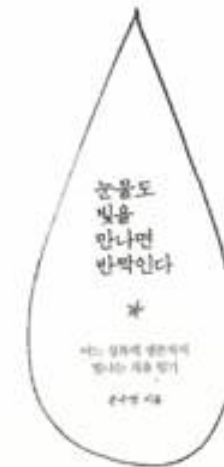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기-2

내가 피해자라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내가 여성주의상담을 한다면?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기-3

내가 피해자라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내가 여성주의상담을 한다면?

추천의 책



추천의 책



고맙습니다.
gurumoon@naver.com

09

또래상담가 긍정리더 옵티미스트를 만나다.

연세대학교 또래상담가 교육과정

또래상담가,
긍정리더 **옵티미스트**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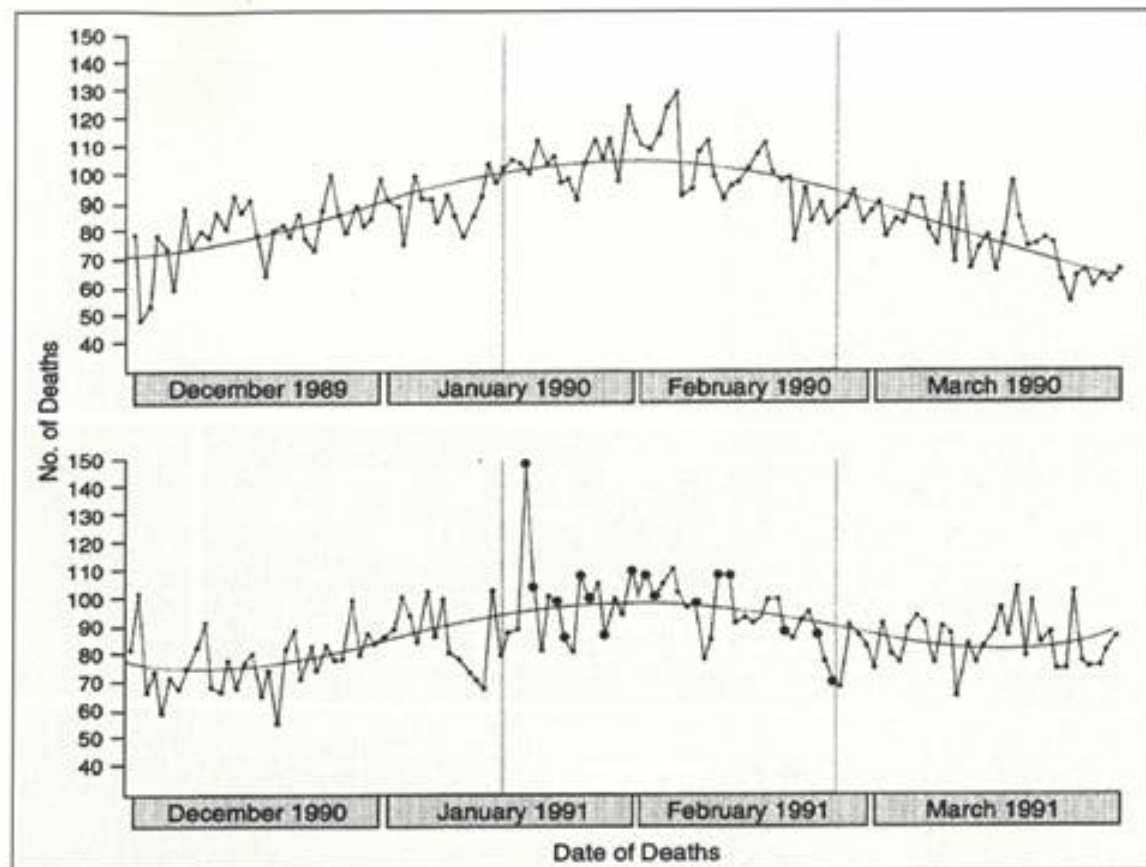
같이  황금명륜
교육연구소

강사 소개



▶ [같이교육연구소] 대표

- ❖ 현재
긍정실천교육센터 감사, 전북여성단체연합 여성문화정보위원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 월간 「Beauty M」 에세이스트
- ❖ 경력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SK행복나눔재단, 한국EAP협회
- ❖ 강의 분야
성폭력 예방교육, 옵티미스트 워크샵, 긍정심리와 강점찾기, 갈등해결



순서

1. 갈등을 요리하는 의사소통 기법
2. 옵티미스트 I: 개념과 사례
3. 옵티미스트 II: 옵티마 9

다양한 참여활동과 토론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워크샵입니다.

기대 나누기



시작하는 시간, 내 마음은...

이 시간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

1. 갈등을 다루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갈등은 선택할 수 없지만
갈등해결 방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갈등'이란?



침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 표준국어대사전

갈등을 요리하는 유쾌한 의사소통훈련



[활동 1]
황금샘만 말하고 볼 수 있습니다.

[활동 2]
모두 다 말하고 볼 수 있습니다.

느낌과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

어떤 주장이 집단화되면 편견이 되기 쉽습니다.

**편견은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고 강화합니다.**

갈등을 요리하는 유쾌한 의사소통훈련



시각차이가 진짜 있다?

- ➡ 우성안 vs 비우성안이 뭔가요?
- ➡ 눈에도 오른눈잡이, 왼눈잡이가 있다!
- ➡ 어느쪽 눈을 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같은 대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말의 황금문 참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2. 진짜 긍정, 옵티미스트를 만나다.



옵티미스트 핵심가치 ABC
 Appreciate 감사하자!
 Better & Better 조금씩, 좀더 나아지자!
 Care 나누고 섬기자!

긍정?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함. / 표준국어대사전

비움의 시간...

긍정으로
 내 온 에너지를 채우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비우는 것!



학습된 무력감 _ 포기가 부르는 공포스런 예언

- 개와 전기충격 실험
_ 마틴셀리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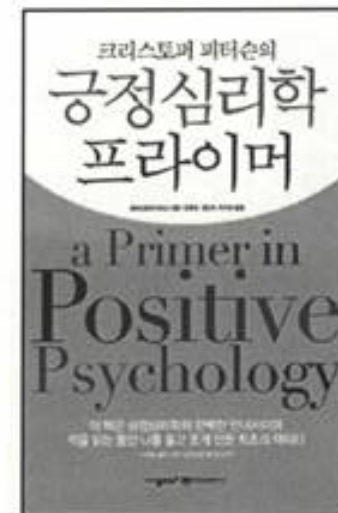


채움의 시간...

다 비워냈다면
'진짜 긍정'으로 채워보자!



대화 실습!



긍정 상승 대화법 _ 긍정심리학자 크리스토퍼 피터슨

-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반응
- 소극적이고 건설적인 반응
- 소극적이고 파괴적인 반응
-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반응

행복... 미래에 대한 중요한 영향력!

- 긍정적 정서와 수명 사이의 관계 연구
_ 데보라 대너, 데이비드 스노든, 웰리스 프리센



<수녀 1>

나는 1909년 9월 26일에 2남5녀의 장녀로 태어났다... 본원에서 예비수녀 기간 동안 나는 노트르담대학에 2학년 라틴어와 화학을 가르쳤다. 앞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사명인 전도, 내적 자유를 위해 힘쓰겠다.

<수녀 2>

주님은 한없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며 나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다... 내가 노트르담대학에서 공부하며 예비수녀로 보낸 지난해는 너무도 행복했다. 이제 나는 큰 기쁨으로 거룩한 습관을 얻고, 신의 사랑이 함께하는 수녀회에서의 삶을 고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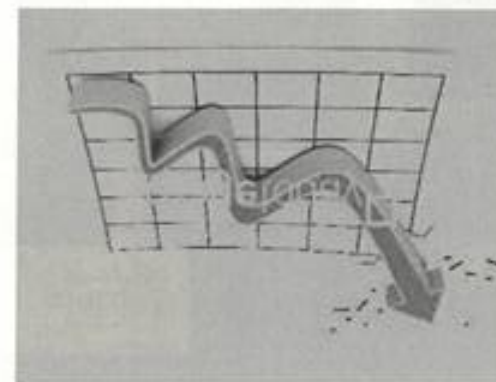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

- 졸업앨범 속 사진(뒤센미소)에 관한 연구
_ 리 앤 하커 & 다쳐 켈트너



차이는 회복력! Resilience

외상 후 성장
PTG
(Post-traumatic growth)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탄력성/복원력/회복력 (resilience)

- 긍정적, 낙관적 생각/태도
- 높은 자존감
- 문제를 단순히 문제로 보는 시각
- 좋은 사회적 관계
- 유머 감각
- 파괴적인 거리와 감정적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
- 이전 성공 경험
- 활동 지향성
- 인내심
- 부정적 정서를 견딜 수 있는 힘
- 적응력
- 신념
- 헌신하는 힘
-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
- 확실한 애착 관계
- 목표 지향성
- 자기 효용성



낙관주의 對 비관주의

- 낙관론자 對 비관론자
 1. 낙관주의자가 비관주의자 보다 우울증에 대하여 강하다.
 2. 직장, 학교, 운동 경기, 사업 등에서 성취를 많이 이루어 낸다.
 3. 유권자는 결국은 낙관주의자를 선택
 4. 건강상태가 더 좋다.
 - 암 환자의 생존률
 - 면역계 강화
 - 심장질환자의 삶의 질
- 긍정적=적극적=낙관적이어야 하는 이유
 - 무의식을 형성하는 사고
 - 긍정적인 사고의 연습과 체득
 - 인생은 누적되는 것이다.

2009, 재정호박사 강의자료

살아있는 옵티미스트



지저분한 방을 바라보는 세가지 시선



비관주의자

낙관주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옵티미스트
행동하는 긍정주의자

3. 또래상담가, 옵티미스트가 되다.



옵티미스트 핵심가치 ABC

Appreciate 감사하자!

Better & Better 조금씩, 좀더 나아지자!

Care 나누고 섬기자!

옵티미스트가 되기 위해

잡아야 하는
세 가지

해야 하는
세 가지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옵티미스트는 삶의 태도입니다.

잡아야 하는
세 가지

도입

생각을 잡자

마음을 잡자

행동을 잡자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 새뮤얼 스마일즈

탈런트 박윤배씨, 실험맨이 되다.



칭찬, 욕에
반응하는
뇌파의 변화

생각의 변화
→ 뇌의 변화

변화된 뇌는
신경계-면역계-
내분비계를 통해
온 몸에 영향

생각을 잡자 !

우울
(depress)

- 자세 :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심호흡을 한다.
- 행위 :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창 밖 풍경을 본다.
노래, 시, 책, 영화, 그림, 글, 춤, 요리.....

불안

- 원인 분석 : 불안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찾아본다.
- 시각 변화 : 불안은 내 몸의 화재경보기, 사이렌소리.
더 큰 도약으로 이끄는 자극제이다.

걱정

- 기인지우에서 유래된 '기우' 다시 생각해보기
- 행위 : 집중, 유도 상상(이미지 트레이닝),
다양한 문제해결방법 중이에 적어보기,
걱정에 관해 이야기하기, 일기 쓰기
행동으로 걱정을 해결하기,
걱정시간을 따로 마련하기,
걱정을 다른 사람에게 날리는 상상하기,
현실 확인, 관심 분산

마음을 잡자 !

분노 다루기

- 심장박동의 증가와 가쁜 호흡은 폐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 심장은 근육으로 더 풍부한 혈액을 펌프질. 이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며 근육에 에너지를 실어줘 몸이 강해짐.
- 그러나 혈액이 근육으로 집중됨으로써 뇌로는 혈액이 덜 보내짐. 이로 인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 결국,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가장 논리적인 생각을 필요로 할 때에 반대로 감정이 격화되고, 판단력은 약해지는 것.
- 이렇게 분노는 신체적 반응이며, 일시적.
- 혈액이 뇌와 심혈관계로 모여 순간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발산. 증가하는 맥박과 빠른 호흡, 신체적 증상은 대처 시작하라는 신호.
- 분노할 때 신체와 생각(판단력)은 반비례. 따라서 분노가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
- 화를 가라앉게 하는 나만의 비법 공유하기~^^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몸을 끊임없이 움직이자. 운동도 좋고 산책도 좋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물을 자주 마시자!

습관을
지배하면
나를
지배한다.

<실천 방법>

- 중요한 것을 우선하라!
 -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
 -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 완벽주의를 포기하라.
-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틈을 주라.
- 미루지 마라.
- 최고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하라.
-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 시간을 즐겁게 사용하라.

해야 하는
세 가지

완성

감사하자

조금씩 좀 더 나아지자

섬기자

옵티미스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숙제

- 하루에 **3**번,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 하루에 **2**번, 어제보다 나아진 나를 "칭찬하기"
- 하루에 **1**번, 섬기는 마음으로 주변 살피기

진실하고 참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면

고마운 마음, 기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조금씩 좀 더 나아지자.

[실패를 견디어낸 사람들]

- » 천재 물리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네 살까지 말을 못하고, 일곱살까지 글을 읽지 못했다.
- » 베토벤은 음악 교사에게서 “작곡가가 될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 » 월트 디즈니는 아이디어가 없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당했다.
- » 톨스토이는 낙제생이었다.
- » 파스퇴르는 대학에서 화학 과목을 잘 못했다.
- » 에이브러햄 링컨은 블랙호크전쟁에 사령관으로 참전했다가 질병으로 퇴역당했다.
- » 윈스턴 처칠은 중학교 때 낙제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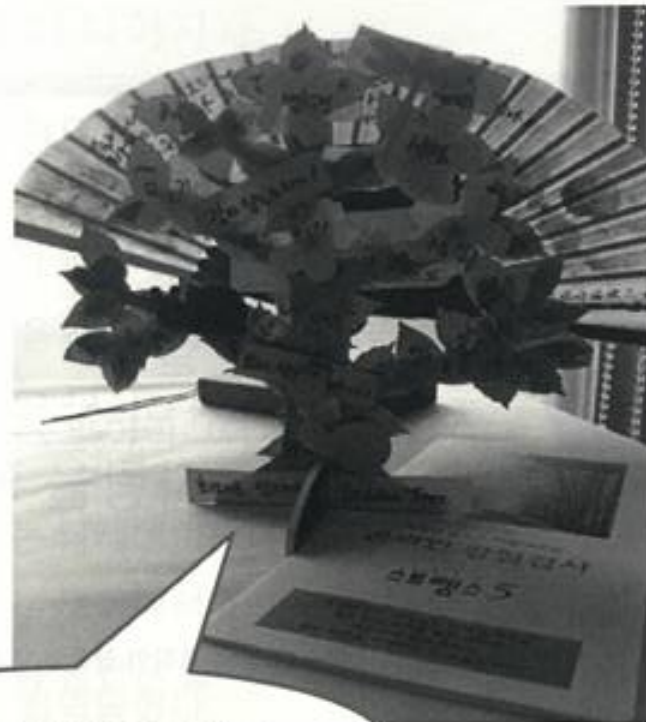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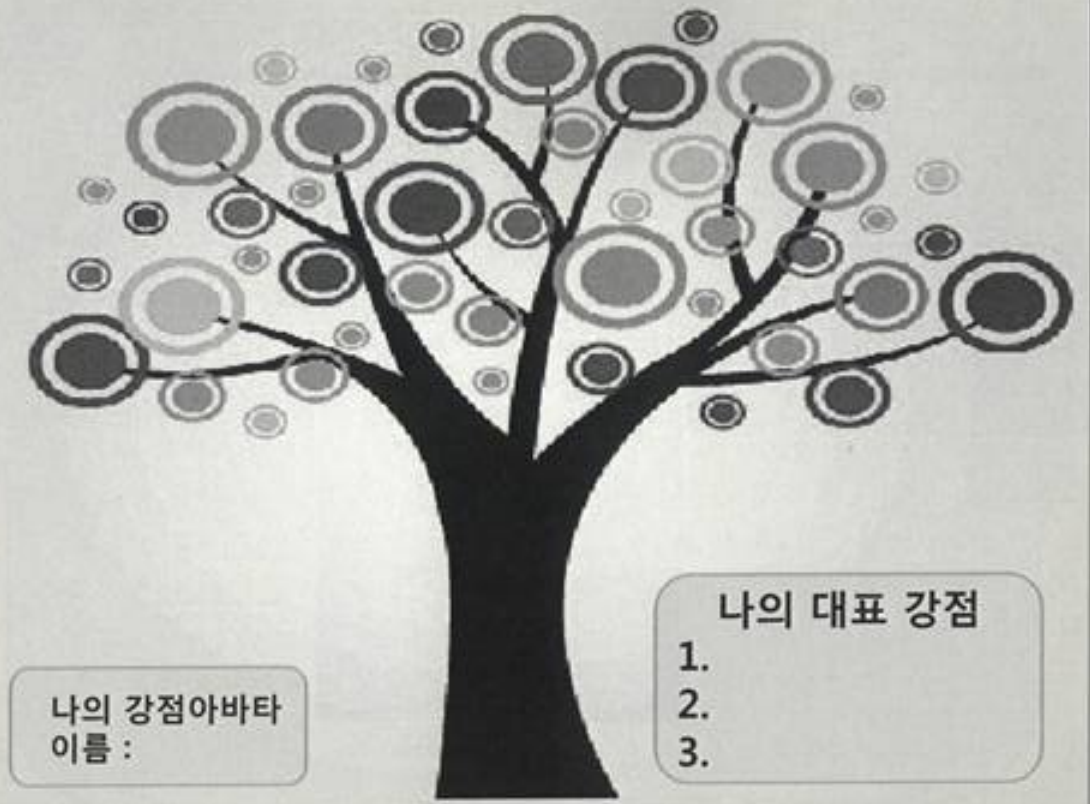
섬기자!



확인

나의 가치를 알자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깨닫자
사랑을 확인하자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기적의 산물은 바로 나 자신이다.



강점이파리를 날려주세요~



카르페 디엠! Carpe Diem!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깨달자!



'Dead Poets Society' (1989)

- >> 나무를 껴안고 "늘 그대로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속삭인다.
- >> 밤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고 "너를 잊지 않게 해줘"라고 얘기한다.
- >> 혼자서도 큰 소리로 어린 날에 좋아했던 동요를 불러본다.
- >> 찬물 한 잔에도 "아! 맛있다!"하고 감탄사를 내뱉는다.
- >> 사랑하는 사람 사진을 하루 한번 이상 들여다본다.
- >> 흰 구름한테 손을 흔들어준다.
- >> 차를 마실 때 오늘 본 꽃을 화제로 삼는다.
- >>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감동받은 시를 읽어준다.
- >> 어린이의 천진한 그림을 책상 유리 밑에 넣어두고 본다.
- >> 지는 해한테 "내일 또 뵙지요"하고 인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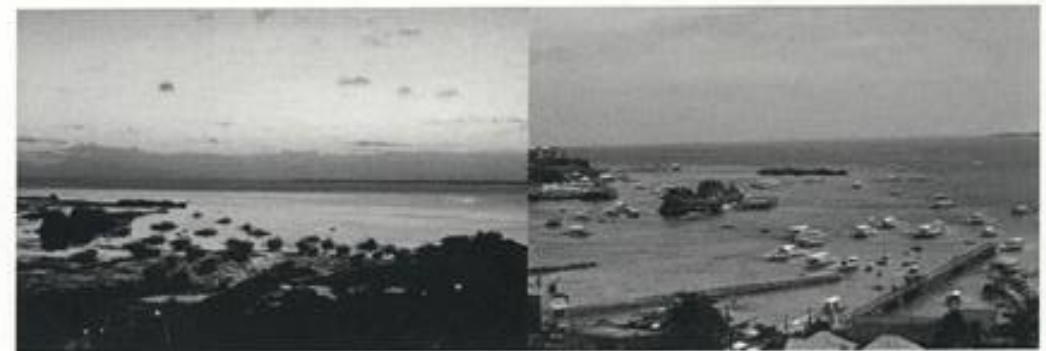
사랑을 확인하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속품도 필요 없고, 건전지도 필요 없다. 다달이 돈 낼 필요도 없고, 소모품 비용도 들지 않는다. 은행 금리와도 상관없으며 세금 부담도 없다.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시간이 지나 퇴색할 염려도 없다. 한 가지 사이즈에 모두가 맞으며 질리지도 않는다.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가장 감동적인 결과를 낳는다.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행복감을 키워준다. 절망을 물리쳐주며 당신의 눈을 빛나게 하고 스스로 당신 자신을 존중하게 해준다. 감기, 얼굴에 난 종기, 골절상에도 효과가 있으며 불치병까지도 극적으로 낫게 한다. 이 약은 특히 가슴에 난 상처에 특효약이다. 이 약은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오히려 혈액순환까지 바로 잡아준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약이다.

(헨리 매튜워드의 시에서...)

사랑을 확인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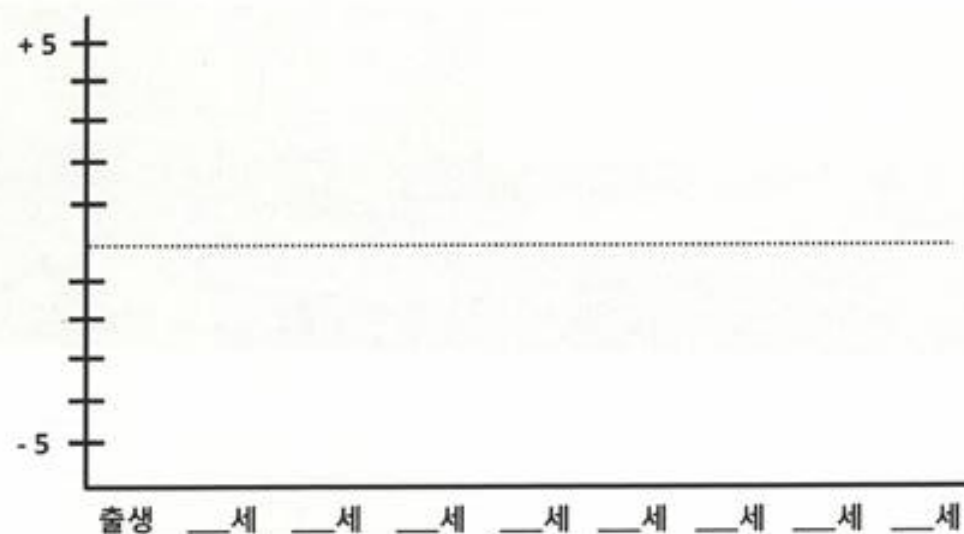


내가 가야 할 길 !

나의 본질을 회복하자. _ 반창고, 골든타임의 교훈

<http://www.youtube.com/watch?v=Vw5Q5y9bunCQ>

회복력의 관점에서 새로 그리는 *Oh, my life!*



내 인생의 최고점!

- ✓ 당시의 상황
- ✓ 내가 한 일
- ✓ 고마운 사람

내 인생의 최저점!

- ✓ 당시의 상황
- ✓ 상황을 견디기 위해 내가 한 일
- ✓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주 큰 복!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복이다.

옵티미스트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본질을 회복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과 관련 없이 만들어진 것들이다.
본질의 가치를 알게 되면 왜곡되어있던 감정, 말, 행동, 습관에 지배받지 않는다.
자신의 본질과 원칙에 의해 행동이 지배받는다.

축하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옵티미스트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첫 날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나요?

옵티미스트 리더십에 관한 문의는 황금샘의 이메일 goldryoon@hanmail.net 로~



10

연세대학교 성폭력예방및처리에 관한 규정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일: 2014.09.01

제정일: 2000.10.10

담당부서: 학생복지처-성평등센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 절차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제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개정 2007. 12. 21.>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 학교의 통제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성평등센터 <개정 2013.08.30>

제6조 (설치)

학생복지처 내에 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8.30, 2010.06.07, 2007.12.21.>

제7조 (구성)

- ①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개정 2013.08.30>
- ② 센터에는 전문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8.30>

제8조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8.30>

1.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13.08.30>
2.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 <개정 2013.08.30>
3.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4.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 보고
5.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개정 2013.08.30>
6.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7.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 기록·보존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08.30>

제10조 (구성)

- ①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교학부총장(위원장), 학생복지처장, 성평등센터소장, 대학원부원장, RC 교육원장으로 하고, 추천직위원은 교수위원 4인(센터 관련 전공교수 1인 포함), 직원위원 3인, 학생위원 3인으로 한다. 교수위원(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폭력사건처리 회의 시 당연직 위원 중 대학원부원장, RC 교육원장, 추천직위원(교수, 직원, 학생)은 해당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4.09.01, 2013.08.30, 2010.12.01, 2010.06.07, 2007.12.21>
- ②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 ③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위원회는 성폭력 사건 당사자들의 재심의 요청 등 특정한 안전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8.30>
- ⑤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남녀위원 수를 동등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8.3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괄한다.
- ②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 <개정 2013.08.30>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피해자 보호
4.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5.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내용 결정 <신설 2013.08.30>
6.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 (회의)

-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센터가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08.30>
- ② 성폭력 사건 처리 회의(이하 "사건처리")는 해당위원 전원출석으로 개최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회의 및 사건처리 이외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사건처리에 참석이 불가능한 해당위원의 사전서면결의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08.30, 2007. 12. 21.>
- ③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 ① 센터는 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30>
- ②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피해자의 동의없이 센터에 성폭력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2013.08.30>
- ③<삭제>
- ④ 센터는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정식 신고가 없더라도 센터에서 인지하게 된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신고사건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4.09.01, 2013.8.30.>
- ⑤ 제4항의 경우 위원장은 센터에서 진행되는 절차와는 별도로 사건 당사자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09.01>

제15조 (심의·의결)

- ①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④센터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이전에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①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권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당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30>

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4. 가해자의 사회봉사

③위원회는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제17조 (경비)

센터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삭제 2007. 12. 21.>

(3)(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제2장 제1절, 제6조, 제10조 제1항, 제 13조, 부칙 제2조<삭제>)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 제10조 제1항)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 제1항)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절, 제6조,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호 내지 제6호, 제9조, 제1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12조 제1호, 제5호(신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17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0조 제1항, 제14조 제4항, 제5항(신설))은 2014. 09. 01.부터 시행한다.

11

연세대학교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 시행세칙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일: 2014.07.14

제정일: 2001.03.15

담당부서: 학생복지처-성평등센터 (02-2123-2118)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 18조에 의거하여 규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1.>

제2조 (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의 학칙을 적용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는 연세대학교 및 부속 기관(연구소, 센터, 연구원 포함)에서 일하는 모든 교강사, 연구원, 직원(임시계약직 포함), 학생(휴학생, 국내외교환학생 등 모든 재적 학생 포함) 등 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해자, 가해자 또는 동조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개정 2013.09.13>

제3조 ()

<삭제 2013.09.13>

제4조 (전문상담원의 자격)

성평등센터(이하 "센터")의 전문상담원은 다음 각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생복지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① 규정 제 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
- ② 성폭력 상담 현장경험이 있는 자
- ③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의사소통교육, 다문화감수성 교육 등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

[본조 개정 2013.09.13]

제5조 (전문상담원의 수)

센터에는 1인의 전문상담원을 두며, 필요시 전문상담원 및 객원상담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9.13>

제6조 (성폭력 예방교육)

① 성폭력 예방 교육은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학기 1시간이상 실시한다.

②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3.09.13>

1. 성폭력 정의
2.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3.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학칙에 의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
6. 기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제7조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 ①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규정 제10조의 당연직 위원 4인, 교수평의회가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교수 3인, 성평등센터 소장(이하 "소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총장이 임명한 젠더 관련 전공교수 1인,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이 추천한 직원 3인,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총여학생회장 또는 총여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대학원학생회장 또는 대학원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으로 한다. <개정 2013.09.13>
- ②교수위원(당연직 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 ③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 ①<삭제 2007. 12. 21.>
- ②<삭제 2007. 12. 21.>
- ③<삭제 2013. 09. 13.>
- ④사건 심의는 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50%초과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09.13.>

제9조 (특별위원회)

- ①위원회내에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3.09.13>
- ②특별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0조 (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본 규정에서 위임된 업무 및 성폭력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학생복지처장과 성평등센터 소장으로 구성된 집행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4.7.14>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집행소위원회 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7.14>
- ③ 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개정 2014.7.14>

제11조 (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 ①센터는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개정 2013.09.13>
- ②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 시 그 피해자와 동성의 전문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성폭력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이 추천하는 동성의 객원 전문상담원이 참여한다. <개정 2013.09.13, 2010. 6. 7.>
- ③전문상담원은 상담시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 ④전문상담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⑤센터는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피신고인,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09.13>

⑥소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13>

⑦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RC의 같은 하우스에 기거하는 등 긴급하게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이전이라도, 집행소위원회의 결정으로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4.7.14>

⑧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해결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처리한다. <개정 2014.7.14, 2013.09.13.>

제12조 (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 ①<삭제 2007. 12. 21.>
- ②심의시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인이 사건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개정 2013.09.13>
- ③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신고인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참고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09.13>
- ④심의·의결과정은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 ⑤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13>
- ⑥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신고인, 피해자 및 피신고인을 의미함),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된다. <개정 2013.09.13>
- ⑦<삭제 2013.09.13>
- ⑧제6항의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3.09.13>

제13조 (징계 및 조치)

- ①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피해자의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실명을 기재한 공개사과문을 작성, 공표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13.09.13>
- ③공개사과는 연세춘추, 센터 홈페이지 등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자 비실명으로 한다. <개정 2013.09.13>
- ④ 학생복지처는 가해자 비실명으로 사건 경위와 처벌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전 연세 구성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09.13>
- ⑤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은 센터가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09.13>
- ⑥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⑦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지정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⑧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⑨성폭력 행위를 방조 또는 동조한 자, 또는 사건처리과정에서의 2차 가해자에게도 징계 및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⑩위원회는 가해자가 재심의 요청없이 징계 및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재발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의 동의없이도 피해자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공개할 수 있다.
- ⑪위원회는 규정 제5조 피해자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폭력사건의 처리 결과를 피해자의 동의하에 1주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재심의)

- ①사건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당사자 각 1회에 한한다.
- ④사건당사자들의 재심의 요청이 있을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들과 위원장이 새로이 추천한 3명의 교수위원(직원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노조위원장 이 새로이 추천한 3명의 직원, 학생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가 새로이 추천한 각 1명의 학생)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3.09.13>

제15조 (기록 및 자료보존)

- ①센터는 성폭력사건 관련자와의 면담 및 조사내용을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개정 2013.09.13>
- ②센터는 성폭력사건의 진위여부조사, 처리과정 등의 전 과정의 기록을 보존한다. <개정 2013.09.13>

부칙

-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규정) <삭제 2007. 12. 21.>
- (3)(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4)(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3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2항<삭제>, 제12조 제1항<삭제>, 부칙 제2조<삭제>)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7조 제1항, 제11조 제2항)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조(삭제),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3항(삭제), 제4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내지 제7항, 제12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삭제),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201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0조 제1항(신설), 제2항 및 제3항, 제11조 제7항(신설) 및 제8항)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연세대학교 규정: equity.yonsei.ac.kr/helper/ys_rules.htm